

# 단층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방안



# 단층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방안



## 연구진

**금 창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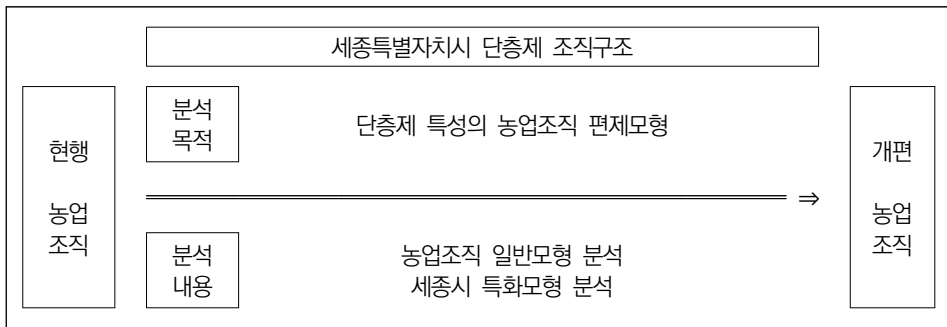
**권 오 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연구목적 및 체계

### □ 연구의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의 단층제 행정구조에 적합한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설계방안을 모색함
-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된 단층제 행정구조에 부합하는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적정모형을 설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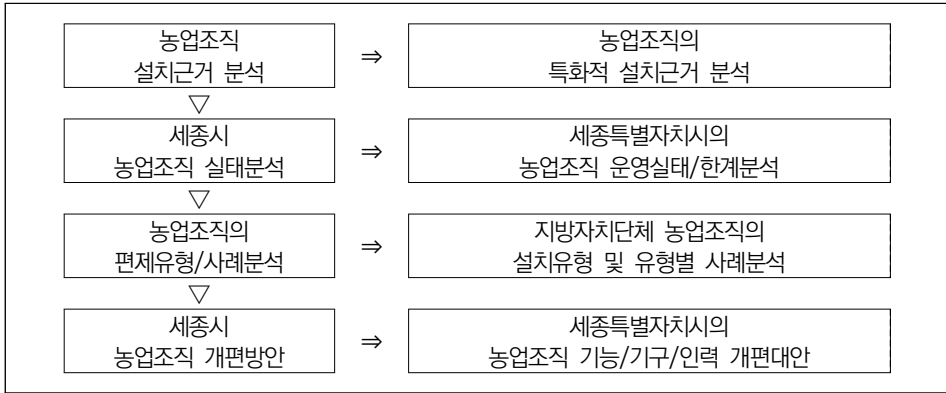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목적



### □ 연구의 체계

- 단층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방안을 위한 연구의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로 설계함
- 농업조직의 설치근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조직 실태분석과 농업조직의 일반적 편제유형 및 관련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조직 개편방안을 모색함

[그림 2] 연구의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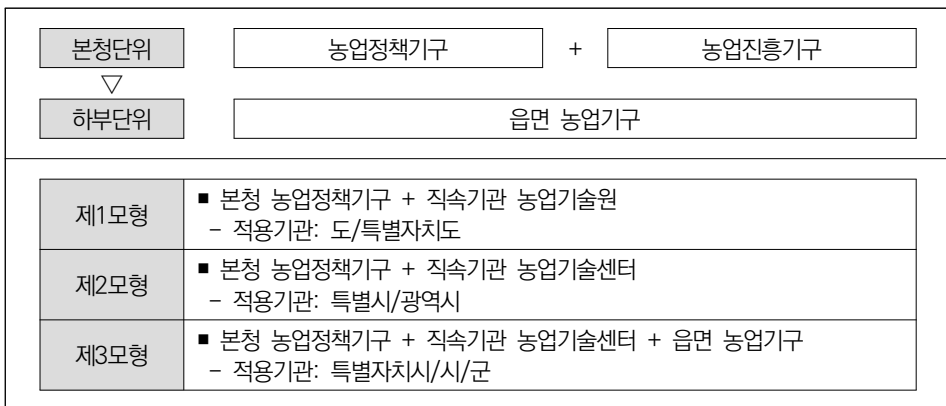
## 2. 주요 연구내용

### □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편제유형

#### ○ 3개 유형으로 구분

- 농업관련 행정조직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농업정책기구와 농업진흥기구로 구분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3개의 편제모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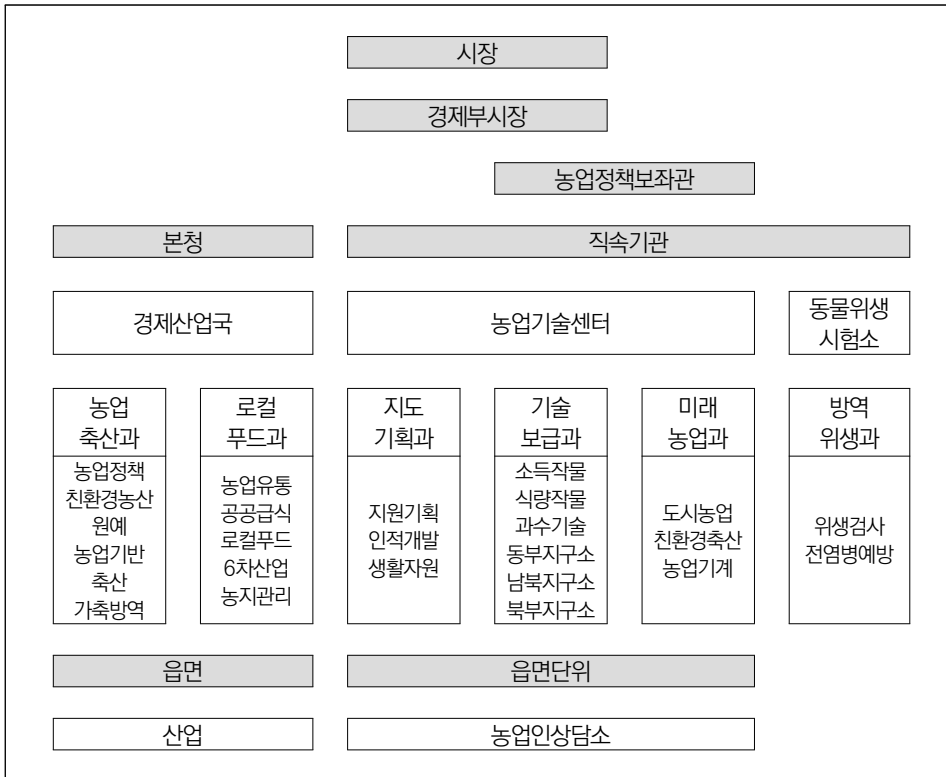
[그림 3] 기초단위 특례제도 개념구조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실태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기구는 기본적으로 전술한 제3모형을 근거로 편제되어 있음
- 본청에 농업정책기구를 직속기관에 농업진흥기구를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 농업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제3모형의 기본구조로 편제를 하되,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농업정책보좌관을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가축방역 관련기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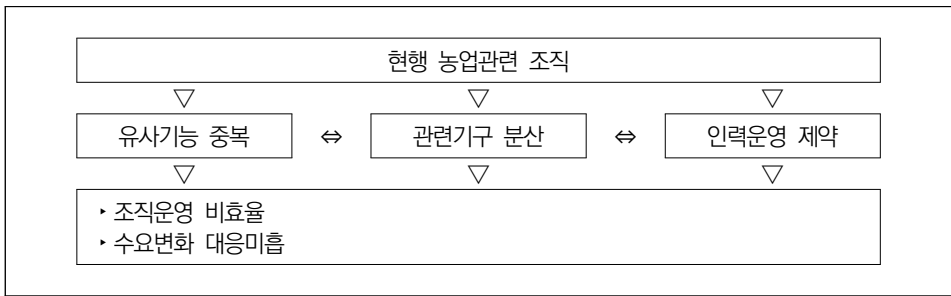
[그림 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실태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한계

- 상기와 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운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요대응의 문제가 나타남
  - 기본적으로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분화에 따른 기능적, 기구적 및 인력적 비효율성이 결과적으로는 관련 행정수요의 양적 및 질적 대응을 제약하는 것임

[그림 5]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조직 운영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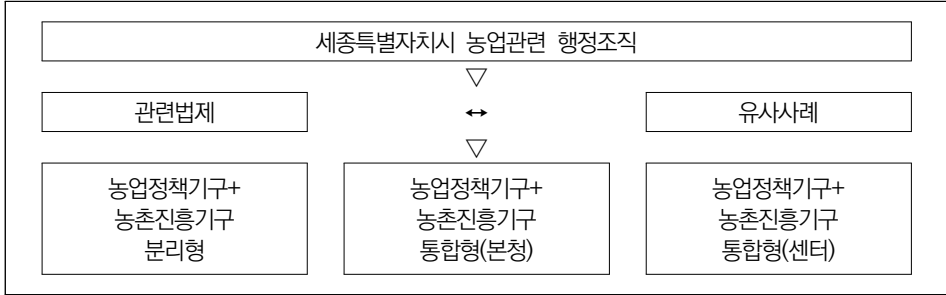


### 3. 도입대안 설계

□ 개편대안의 설계방향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의 적용을 통해서 현행의 한계들을 해소함
  - 즉, 관련법제와 유사사례의 반영을 통해서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를 현재와 같이 분리형 구조를 유지하는 대안과 본청으로 통합하는 대안 및 센터로 통합하는 대안 등을 설계하되, 현행의 조직편제에서 발생되고 있는 제반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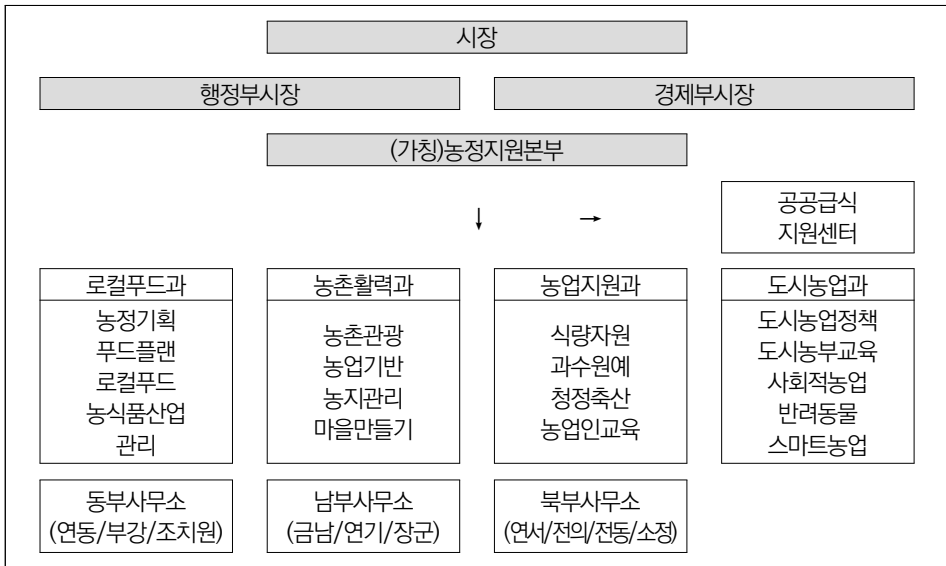
[그림 6] 개편대안의 검토방향



□ 최적대안의 설계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최적대안으로 통합편제(지역본부) 대안을 제시함
  - 현행의 본청 경제산업국의 농업정책기구와 직속기관의 농촌진흥기구를 통합하여 독립적인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것임

[그림 7] 통합형(지역본부) 개편대안





# CONTENTS

---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6
제3절 연구의 체계도 .....	7
<b>제2장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고찰</b> .....	<b>9</b>
제1절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의의 .....	11
1.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개념 .....	11
2.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설치근거 .....	14
제2절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유형 .....	16
1. 기구편제 유형 .....	16
2. 편제유형별 사례분석 .....	17
3. 편제유형별 특징 .....	20
제3절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정책 .....	22
1. 분권정책 분석 .....	22
2. 자치조직권 경과 .....	25
3. 농업조직 정책분석 .....	28
<b>제3장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실태분석</b> .....	<b>35</b>
제1절 분석설계 .....	37
제2절 세종시 조직관리 특성 .....	39
1. 법적 개념 .....	39

2. 구조특례 .....	40
3. 기능특례 .....	41
제3절 세종시 농업관련 수요변화 .....	43
1. 농업관련 수요변수 .....	43
2. 농업분야의 전망 .....	45
3. 수요변수별 변화분석 .....	49
4. 수요변화 종합 .....	53
제4절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현황 .....	54
1. 조직구조 .....	54
2. 농업관련 행정조직 현황 .....	54
제5절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한계 .....	65
<b>제4장 지자체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사례분석 .....</b>	<b>67</b>
제1절 사례대상 선정 .....	69
제2절 농업관련 행정조직 사례분석 .....	71
1. 농업관련 행정조직 편제유형 .....	71
2. 분리운영 사례 .....	73
3. 통합운영(본청→센터) 사례 .....	77
4. 통합운영(센터→본청) 사례 .....	81
제3절 사례분석 결과 .....	84
<b>제5장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방안 .....</b>	<b>85</b>
제1절 기본방향 .....	87
제2절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논리 .....	89

# CONTENTS

---

1. 조직설계 의의 .....	89
2. 조직설계의 방법 .....	89
제3절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방안 .....	91
1. 분리구조 편제대안 .....	91
2. 통합구조 개편대안(본청 통합) .....	96
3. 통합구조 개편대안(지역본부) .....	102
제4절 개편대안의 적용방안 .....	108
1. 최적대안의 선정 .....	108
2. 개편대안 적용방안 .....	109
<b>【참고문헌】</b> .....	<b>111</b>

## 표목차

[표 1-1] 연구의 범위 .....	5
[표 1-2] 연구의 방법 .....	6
[표 2-1] 편제모형별 비교 .....	21
[표 2-2] 역대정부의 분권정책 실태 .....	23
[표 2-3] 현행정부의 도입정책 .....	24
[표 2-4] 기구설치권 및 정원관리권 이양실적 .....	27
[표 2-5] 농촌진흥기구의 설치경과 .....	29
[표 2-6]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법제 .....	32
[표 3-1] 세종특별자치시의 기능적 특례내용 .....	41
[표 3-2] 농업 총량지표의 추이와 전망(1970~2030) .....	45
[표 3-3] 국민1인당 주요 농산물 소비량 추이 및 전망 (1970~2030) .....	46
[표 3-4] 농촌공간 및 주거생활의 추이와 전망(2000~2030) .....	47
[표 3-5] 농촌관광 수요의 추이 및 전망(2005~2030) .....	48
[표 3-6] 세종특별자치시 농가인구의 추이 .....	49
[표 3-7] 세종특별자치시 경지면적 추이 .....	50
[표 3-8] 세종특별자치시 가축수 추이 .....	51
[표 3-9] 세종특별자치시 가축전염병 예방실적 추이 .....	52
[표 3-10] 세종특별자치시 가축전염병 예방실적 추이 .....	53
[표 3-1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행정기구의 관장기능 .....	57
[표 3-1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행정기구의 인력규모 .....	64
[표 4-1] 시군의 농업조직 편제유형 .....	72
[표 4-2] 분리형 편제유형의 사례대상 선정 .....	73
[표 4-3] 분리형 사례대상의 기구편제 실태 .....	76
[표 4-4] 통합형 편제유형의 사례대상 선정 .....	77
[표 4-5] 통합형(본청→센터) 사례대상의 기구편제 실태 .....	80

# CONTENTS

---

[표 4-6] 분리형 편제유형의 사례대상 선정 .....	81
[표 4-7] 통합형(센터→본청) 사례대상의 기구편제 실태 .....	82
[표 4-8] 사례분석의 결과종합 .....	84
[표 5-1] 분리구조 편제논거 .....	91
[표 5-2] 분리형 편제유형의 기존사례 .....	92
[표 5-3] 농업관련 행정기능의 조정검토 .....	94
[표 5-4] 분리구조 편제양식의 장단점 .....	96
[표 5-5] 시도의 기구설치 범위 .....	97
[표 5-6] 통합형(본청) 편제유형의 기존사례 .....	98
[표 5-7] 농업관련 행정기능의 본청 통합설치 검토 .....	99
[표 5-8] 통합구조(본청) 편제양식의 장단점 .....	102
[표 5-9] 지역본부 설치논거 .....	103
[표 5-10] 통합형(지역본부) 편제유형의 기존사례 .....	103
[표 5-11] 농업관련 행정기능의 지역본부 통합설치 검토 .....	105
[표 5-12] 통합구조(지역본부) 편제양식의 장단점 .....	107
[표 5-13] 개편대안의 타당성 판단 .....	109
[표 5-14] 사업본부·사업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	110

<b>그림목차</b>	[그림 1-1] 연구의 목적 .....	4
	[그림 1-2] 연구의 체계도 .....	7
	[그림 2-1]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개념 .....	13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농업조직 설치근거 .....	14
	[그림 2-3] 지방자치단체 농업조직 편제양식 .....	17
	[그림 2-4] 충청남도 농업관련 행정기구 편제사례 .....	18
	[그림 2-5] 대전광역시 농업관련 행정기구 편제사례 .....	19
	[그림 2-6] 천안시 농업관련 행정기구 편제사례 .....	20
	[그림 2-7]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의 변천과정 .....	26
	[그림 3-1]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실태분석 방법 .....	38
	[그림 3-2] 세종특별자치시의 개념구조 .....	39
	[그림 3-3]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조 .....	40
	[그림 3-4] 농업관련 수요변수 도출 .....	44
	[그림 3-5]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설치구조 .....	54
	[그림 3-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관련 행정기구 현황 .....	56
	[그림 3-7]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조직 운영한계 .....	65
	[그림 4-1] 사례분석의 대상 .....	70
	[그림 5-1] 개편대안의 검토방향 .....	88
	[그림 5-2] 기구설계의 검토기준 .....	90
	[그림 5-3] 분리형 개편대안 .....	95
	[그림 5-4] 통합형(본청) 개편대안 .....	101
	[그림 5-5] 통합형(지역본부) 개편대안 .....	106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도





## 제1장

## 서론

KRILA

## 제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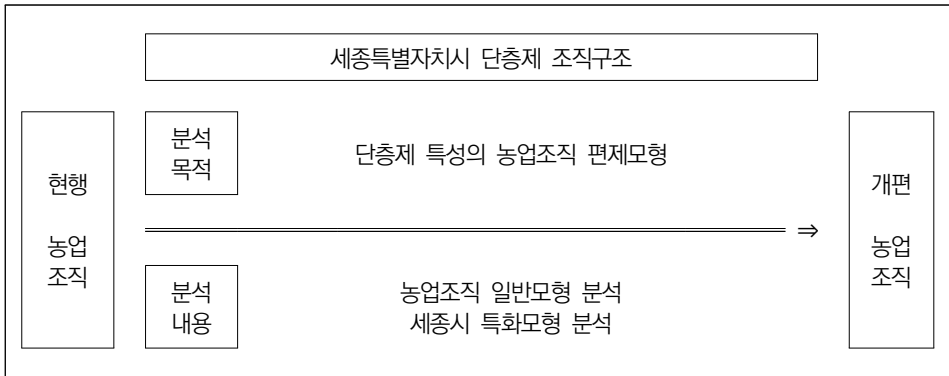
## 연구의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관할의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행정계층의 구조특례가 적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서 광역기능과 기초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련 조직은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에 따라 농촌진흥기구의 설치가 달리 규정되고 있음
  - 농촌진흥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되, 도와 특별자치도에는 농업기술원을 그리고 특·광역시와 특별자치시,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전술한 행정계층의 구조특례와 더불어 농촌진흥기구의 설치법령에 따라 국내 유일의 농업관련 조직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즉, 본청의 농업정책기구와 직속기관의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의 농정관련 기구 등으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비해서는 농업기술원이 아닌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특·광역시에 비해서는 읍면의 농정관련기구가 추가되어 있는 기구편제로 광역단위이면서도 기초단위의 농업관련 조직편제를 보유하고 있음
- 더욱이 최근의 농업관련 트렌드는 생산과 소비 등에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추세임
  - 생산에서는 기후변화로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는 동시에 자동화의 확대로 장소제약이 최소화되는 등 생산방식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고 있으며, 소

비에서는 1인 가구의 확대와 소득수준의 증가 등으로 친환경·간편식 시장이 확대되고 대형유통업체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 상기와 같은 농업관련 트렌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조직을 수요와 기능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단층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본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의 전통적인 농업관련 조직구조를 새로운 농업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기능중심의 조직편제를 모색하고자 함

[그림 1-1] 연구의 목적



【 과업지시서 요청사항 】

- 세종시형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방안 모색
  - 현재 세종시의 농업관련 조직의 진단
  - 도농복합시로서의 미래 농업행정 수요예측
  - 농업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읍면조직 기능 재설계 방안
  - 본청 부서와 사업소간 업무조정 또는 통폐합 등 효율성 제고방안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전술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함
  - 공간범위: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방안은 기본적으로 광역단위이면서도 기초단위의 농업행정 조직구조를 보유한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므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한함
  - 기간범위: 정책대안의 분석 및 적용의 시점은 원칙적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며, 추진경과와 사례분석 등은 내용별 기준시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책대안의 적용시점은 2020년 이후를 기준으로 함
  - 대상범위: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므로 본청의 농정조직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의 농업관련 조직 전체를 연구의 대상범위로 설정하되, 동물방역에 관한 기능검토를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을 대상범위에 포함함
  - 내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개편대안의 모색에서는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과 기구 및 인력 운영의 개편에 초점을 두고, 여타 조직진단의 제반요소들은 제외함

[표 1-1] 연구의 범위

구분	내용
공간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단위</li> <li>- 세종특별자치시 전역</li> </ul>
시간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분석 기준연도 : 2020년</li> <li>- 대안적용 목표연도 : 2020년 이후</li> </ul>

구분	내용
대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관련조직</li> <li>- 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농업조직</li> </ul>
내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조직 제반요소</li> <li>- 기능·기구·인력 개선대안</li> </ul>

## 2. 연구의 방법

- 연구방법은 각 부문별 연구내용에 따라 적정방법을 적의 활용함
  - 문헌조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조특성과 농업조직의 설치규정 및 유사사례 등에 관한 이론적 및 제도적 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 국내외 문헌분석을 실시함
  - 면담조사: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수요 변화에 따른 현행 조직구조의 대응 수준과 문제점 및 합리적 개편방향 등에 대한 심층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실시함
  - 브레인스토밍: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조직의 실태파악을 위한 분석설계 및 개편대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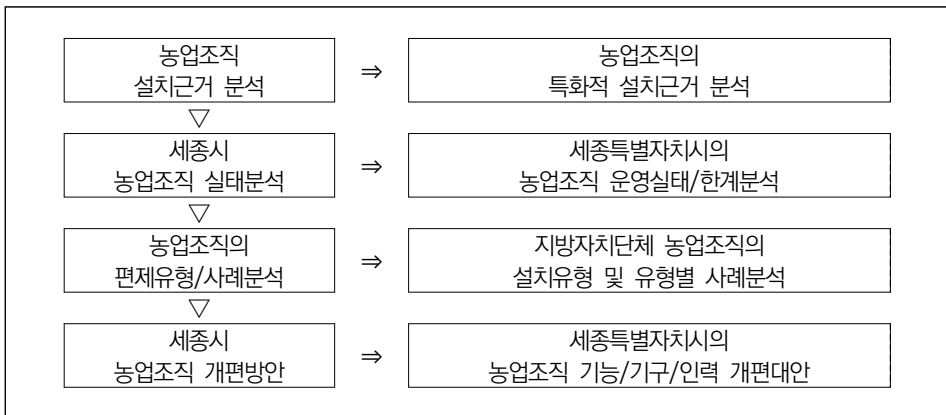
[표 1-2] 연구의 방법

구분	내용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기존논의의 검토</li> </ul>
면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관련조직의 실태 및 개선방향 의견수렴</li> </ul>
브레인스토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조직 개편대안의 타당성 검증</li> </ul>

### 제3절 연구의 체계도

- 단층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방안을 위한 연구의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로 설계함
  - 농업조직의 설치근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조직 실태분석과 농업조직의 일반적 편제유형 및 관련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조직 개편방안을 모색함

[그림 1-2] 연구의 체계도





## 제2장

#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고찰

---

제1절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의의

제2절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유형

제3절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정책





## 제2장

##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고찰

KRILA

## 제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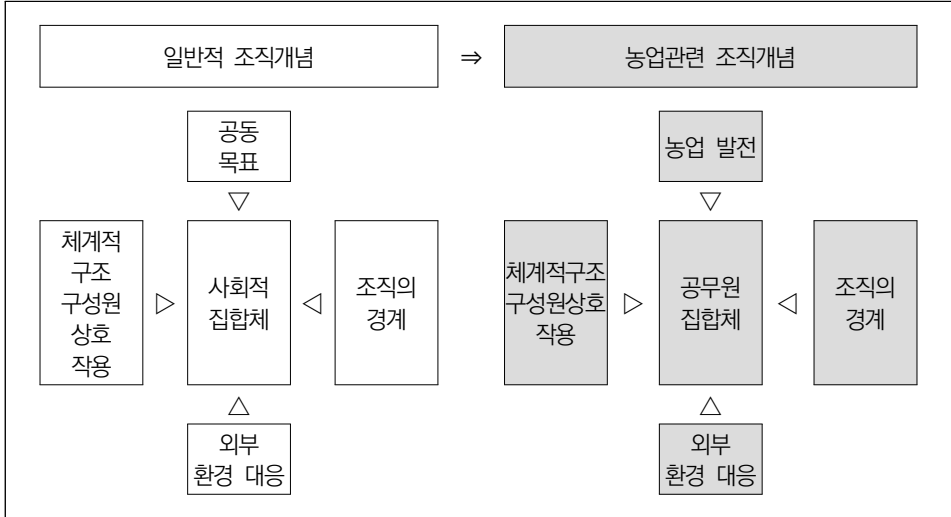
##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의의

## 1.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개념

- 일반적으로 조직은 다양한 개념제시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요소로 구성되는 사회적 집합체로 규정되고 있음
  - 즉, 조직은 공동의 목표와 체계화된 구조 및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조직의 경계, 외부환경에의 적응 등을 요소로 구성되는 사회적 집단이며(Daft, 1992),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모든 조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임
- 조직의 구성요소인 공동의 목표는 조직의 존립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음(이창원·최창현, 1997)
  - 조직의 목표는 조직에 따라 다르고, 조직단위와 구성원 단위의 목표가 다를 수 있으나 특정의 목표가 없는 조직은 존립할 수 없으며, 조직목표에 따라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게 됨
- 체계화된 구조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적 과정들을 의미함
  -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수행할 과업을 분담시키고 분담된 과업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을 규명하며, 역할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유형화된 상호작용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임(Kast & Rosenzweig, 1979)
- 조직의 경계(boundary)는 조직의 내부에 있는 요소와 외부에 존재하는 요소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조직화를 위한 필수적인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음

-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화되어 특정의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다른 조직들과 구분되는 사회적 집단이 되는 것으로, 다른 조직과 구분하는 조직의 경계는 외부의 환경과 폐쇄적일 경우 매우 뚜렷하고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반면에 개방적일 경우에는 유동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이창원·최창현, 1997)
- 외부환경에의 적응은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기본적 요소로 개방적 조직에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도 함
  - 조직환경은 조직의 경계 밖에 존재하면서 조직 전체나 일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변수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환경은 조직이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과 인적·물적 자원, 기술적 정보, 시장 등을 제공하여 조직의 생성과 존속 및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Daft, 1992)
- 상기의 논의에 따르면, 농업조직은 조직의 공동목표가 농업분야로 구체화된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농업조직은 조직이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공동목표와 체계적 구조화 및 구성원의 상호작용, 조직의 경계, 외부환경의 대응 등에서 공동의 목표가 농업분야의 발전으로 구체화된 정부부문의 조직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목표를 제외하고는 조직의 일반적 구성요소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회적 집합체임

[그림 2-1]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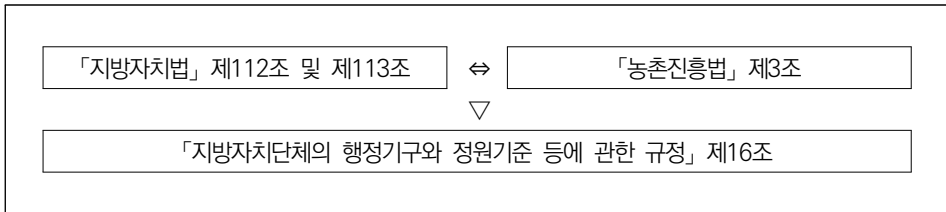
Weber	-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간에 상호작용하는 인간들의 협동집단
Barnard	-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바칠 의욕을 지닌 두 사람 이상의 인간들이 상호 의사전달하는 집합체
Selznick	- 계속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구조
Etzioni	- 특정한 목표의 추구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구성되고 다시 재구성되는 사회적 단위
Katz/Kahn	-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내부관리를 위한 규제장치와 외부 환경관리를 위한 적응구조를 발달시키는 인간들의 집단
Cohen/March/Olsen	- 문제를 찾아 내 선택하는 것, 의사결정 상황에서 공표되는 그러한 문제에 관한 쟁점과 구성원들의 감정, 해결 가능한 쟁점에 관해 제시되는 해결책,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자 등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무원칙하고 무작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집합체
Weick	- 현저하게 상호연관된 행위를 통해서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데 그 타당성이 합의된 문법

출처: 이창원·최창현(1997).

## 2.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농업관련 행정조직은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고,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 등으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촌진흥법」 제3조에서는 농업관련 진흥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서는 농업관련 직속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농업조직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p>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p> <p>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p>
---------	--

	<p>장관이 임명한다.</p> <p>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p>
「농촌진흥법」	<p>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p>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p>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lt;개정 2012. 6. 29., 2016. 12. 30.&gt;</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lt;개정 2012. 6. 29., 2016. 12. 30.&gt;</p> <p>③ 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말한다)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소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과 군수의 명을 받는다)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lt;개정 2012. 6. 29.&gt;</p> <p>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⑤ 농업기술원에 국이나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과와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⑦ 제6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⑧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과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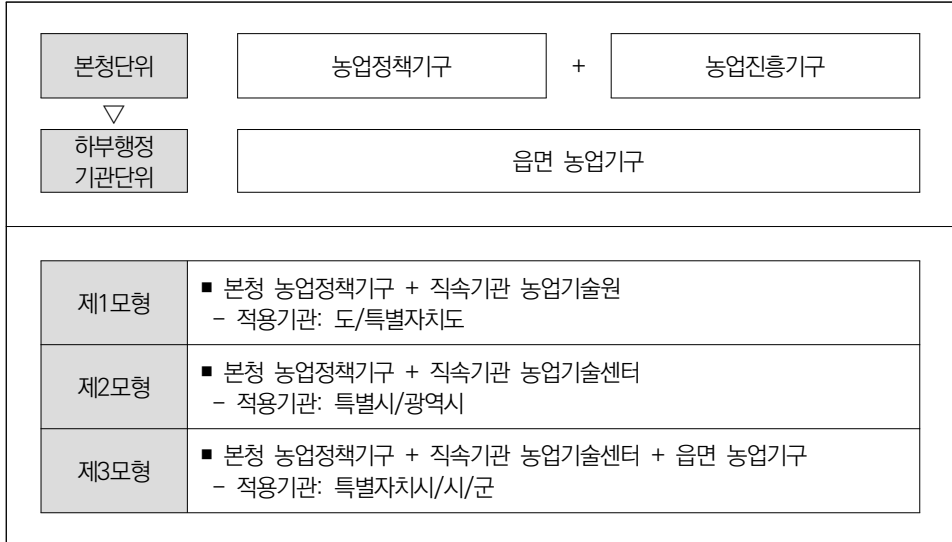
## 제2절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유형

### 1. 기구편제 유형

-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련 기구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농업정책기구와 농업진흥기구로 구분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3개의 편제모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음
  - 제1모형은 도와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모형으로 본청에 농업정책기구를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농업진흥기구인 농업기술원을 설치하는 편제양식이고, 제2모형은 특별시(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설치되는 모형으로 본청에 농업정책기구를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농업진흥기구인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는 편제양식이며, 제3모형은 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및 군에 설치되는 모형으로 본청에 농업정책기구를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농업진흥기구인 농업기술센터를 그리고 읍면에 농업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편제양식임
  - 다만, 자치구는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인 시 및 군과 달리 농업진흥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자치구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및 광역시에 농촌기술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음
- 상기의 농업관련 기구의 편제양식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농업정책기구 및 농촌진흥기구는 농업수요의 발생규모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형의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에는 농촌진흥기구로 광역인 도와 특별자치도에 농업기술원을 그리고 기초인 시·군에 농촌기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농업수요가 적은 도시형 지방자치단체에는 농업진흥기구를 광역인 특·광역시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특례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과 동일

하게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를 본청에 그리고 농촌진흥기구를 직속 기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2-3] 지방자치단체 농업조직 편제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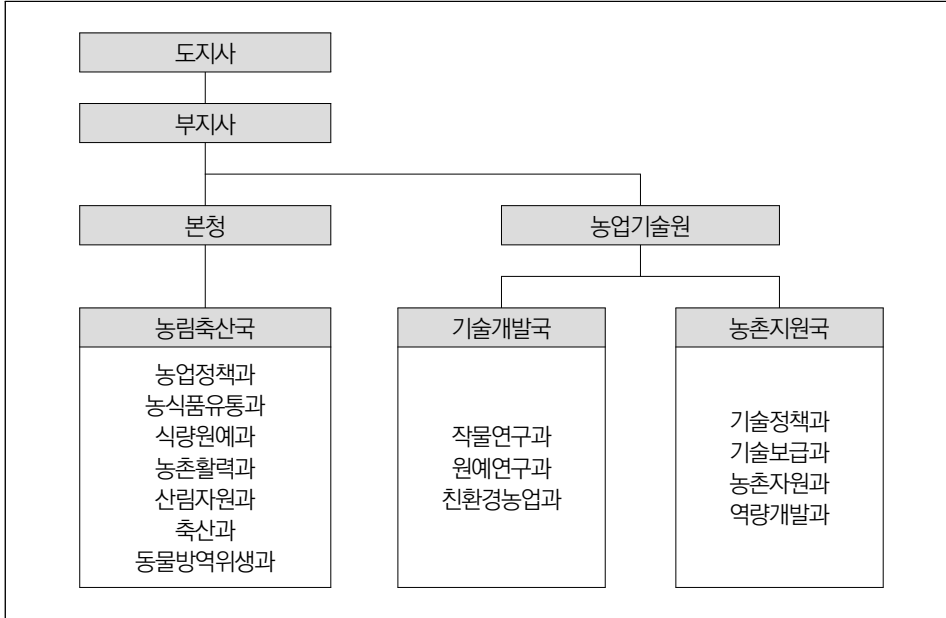
## 2. 편제유형별 사례분석

### 1) 제1유형 사례

- 제1유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도와 특별자치도에 적용하는 농업관련 기구편제 모형으로 농업정책기구와 농업진흥기구를 각각 본청과 직속기관으로 분리 설치하는 것임
  - 사례기관으로 충청남도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편제실태를 보면, 본청에 농림축산국을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원을 설치하고 있음
  - 본청의 농림축산국은 관할에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유통과, 식량원예과,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농원기술원에는 원장 산하에 기술개발과와 농촌지원국을 설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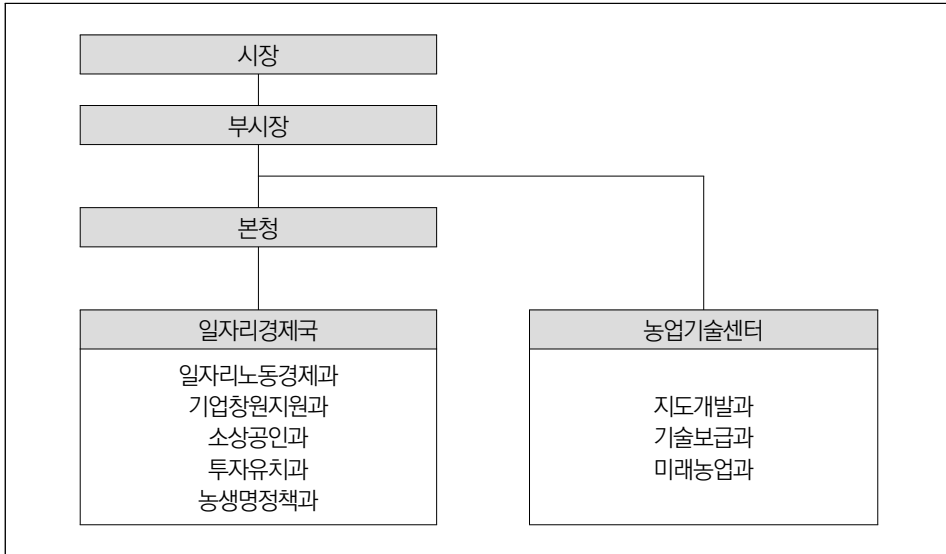
[그림 2-4] 충청남도 농업관련 행정기구 편제사례



## 2) 제2유형 사례

- 제2유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시와 광역시에 적용하는 농업관련 기구편제 모형으로 농업정책기구와 농업진흥기구를 각각 본청과 직속기관으로 분리 설치하는 것임
  - 사례기관으로 대전광역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편제실태를 보면, 본청의 일자리경제국에 관련기구를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고 있음
  - 본청의 일자리경제국에는 농업정책기구로 농생명정책과를 설치하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기술센터장 산하에 지도개발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를 설치하여 농업관련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그림 2-5] 대전광역시 농업관련 행정기구 편제사례



### 3) 제3유형 사례

- 제3유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자치시와 시 및 군에 적용하는 농업관련 기구편제 모형으로 농업정책기구와 농업진흥기구를 각각 본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으로 분리 설치하는 것임
- 사례기관으로 천안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편제실태를 보면, 본청의 농업환경국에 관련기구를,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를 그리고 구청과 읍면에 농업관련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있음
- 본청의 농업환경국에는 농업정책기구로 농업정책과와 축산과를 설치하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기술센터장 산하에 농촌지원과와 연구보급과를, 구청에는 산업교통과에 농축산팀을 그리고 읍면에는 산업건설팀에 농정 및 축산업무를 배치하여 농업관련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그림 2-6] 천안시 농업관련 행정기구 편제사례



### 3. 편제유형별 특징

- 전술한 농업관련 행정기구의 편제모형을 기능배분과 기구편제 및 직급단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기능배분에서는 3개 모형의 전체가 농업정책기능과 농업진흥기능을 분리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기구편제에서는 제1모형과 제2모형은 본청과 직속기관의 이원적 기구편제임에 비하여 제3모형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의 삼원적 기구편제를 보이고 있으며, 직급단위에서는 제1모형은 농업정책기구와 농업진흥기구의 부서장을 공히 국장급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제2모

형과 제3모형은 농업정책기구는 과장급으로 그리고 농업진흥기구는 국/과장급으로 인구규모에 따라 달리하고 있음

- 다만, 기능배분에서 제3모형은 적용대상인 시·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달리 다양한 형태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사례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

[표 2-1] 편제모형별 비교

구분	제1모형	제2모형	제3모형
기능배분	- 정책기능: 본청 - 진흥기능: 직속기관	- 정책기능: 본청 - 진흥기능: 직속기관	- 정책기능: 본청 - 진흥기능: 직속기관
기구편제	- 본청 ↔ 직속기관	- 본청 ↔ 직속기관	- 본청 ↔ 직속기관 ↔ 읍면
직급단위	- 정책기능: 국장급 - 진흥기구: 국장급	- 정책기능: 과장급 - 진흥기구: 국/과장급	- 정책기능: 과장급 - 진흥기구: 국/과장급

## 제3절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정책

### 1. 분권정책 분석

#### 1) 역대정부 정책경과

-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을 비롯한 조직일반에 대한 역대정부의 분권정책은 자치조직권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왔음
  - 자치조직권은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자치권의 하나임
- 역대정부의 분권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치조직권은 모든 정부의 공통적인 정책과제로 다루어진 것은 아님
  - 노무현 정부에서는 분권정책 추진과제의 하나로 포함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분권과제로 채택되지 못하였음
-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자치조직권의 확대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분권과제로 채택되었음
  - 「지방분권특별법」 제12조제2항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과 인력관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의 강화를 위한 과제의 하나로 “자치조직권 강화”를 채택하였음
- 다만,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자치조직권은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 등과 달리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서 접근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접근되어 왔음
  - 이는 자치조직권의 특성이 조직관리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승인권 또는 감독권의 폐기 등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임

【표 2-2】 역대정부의 분권정책 실태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분권특별법」제12조(자치행정 역량 강화)</li> <li>-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li>-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과 인력 관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무원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ul>	부재	부재
관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li> <li>- 자치입법권 확대</li> <li>- 자치조직권 강화</li> <li>-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li> <li>- 자치단체 자체혁신체제 구축</li> <li>-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li> <li>-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li> <li>- 지방자치단체 인사공정성 제고</li> <li>-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li> </ul>	부재	부재

## 2) 현행정부의 정책현황

- 문재인 정부의 분권정책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다만, 분권정책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에서 규정되었던 자치조직권 확대에 관한 내용이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된 이

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까지 법률의 전체적 내용이 승계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됨

- 문재인 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한 과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 자치조직권 확대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임
-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기존의 불합리한 제한규정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정수 및 통솔범위의 개선과 본청의 실·국·본부 수를 결정하는 인구구간의 개선, 적정인력의 산출을 위한 행정수요 지표의 추가 개발, 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 등 관련 기구설치의 자율성 확대, 전문임기제 운영의 개선, 의회사무기구 관련기준 개선 등이 그것임

**[표 2-3] 현행정부의 도입정책**

구분	내용	
관련법령	부재	
행정안전부 구상	→	자치분권위원회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회 역할확대</li> <li>- 자율적·탄력적 자치조직권 확대</li> <li>-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li> <li>-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강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li> <li>-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li> <li>-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li> <li>-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li> <li>-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li> <li>-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li> <li>-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li> <li>-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li> </ul> </li> </ul>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조직제도의 불합리한 제한 개선으로 기구정원규정 등에는 자치단체간 형평성 및 균형유지를 위한 최소기준만 존치</li> <li>- 자치단체 재정 독립성 등과 연계해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li> <li>-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로 운영상의 책임과 의무 명확화</li> </ul> </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조직 책임성 및 전문성·효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기반관리) 성과중심의 인력·조직 관리를 위해 주민 삶과 직결된 성과지표 산출·공개</li> <li>- (조직진단 강화) 소방·사회복지 등 주요 총원분야에 대해 조직, 인사 및 일하는 방식을 포함한 특정·정밀진단 실시</li> <li>- (주민·의회 공개확대) 자치단체 기구·정원관리 운영현황에 대한 지방의회 제출 의무화, 언론·주민 공개대상 조직정보 확대</li> </ul> </li> </ul>
불합리한 제한규정 및 조직관리제도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 부단체장 정수 및 통솔범위 개선</li> <li>- 실·국·본부 수 인구구간 개선</li> <li>- 적정인력 산출을 위한 행정수요 지표 추가 개발</li> <li>- 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 등 관련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li> <li>- 전문임기제 운영 개선, 의회사무기구 관련기준 개선 등</li> </ul>

## 2. 자치조직권 경과

### 1) 조직관리 모형변천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는 크게 행정기구와 인력확보로 구분되고, 이에 대한 자율성의 정도를 자치조직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즉,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조직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행정기구와 인력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것임
- 상기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는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점차 확대되어 왔지만, 현재까지도 기본적인 결정사항은 관련법령으로 규정되고 있는 실정임
  -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범위와 정원규모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규정되고 있는 실정임
-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인력확보 등에 대한 관련규정은 역대정부의 분권정책 등에 따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음
  -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본청의 실·국설치 인구구간의 축소와 더불어



구간별 설치규모의 확대를 도모하여 왔고, 정원기준에 대해서는 정원관리 모형의 변경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왔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는 1995년을 기점으로 특정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왔음
  - 1995년 이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정원을 결정하여 승인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에 비하여 이후부터는 일정한 기준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원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왔음

**[그림 2-기]**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의 변천과정

	1987년	1988년	1994년	2007년	2014년
<b>제도</b>	개별승인제	⇒ 기준정원제	⇒ 표준정원제	⇒ 총액인건비제	⇒ 기준인건비제
<b>관계 법령</b>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내무부령)」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내무부훈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b>주요 내용</b>	행정기구 및 정원의 대통령령 및 내무부장관 승인	기준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기준범위 내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되, 인력 불균형을 다소 시정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재정력 근거 총액인건비 운영

출처: 금창호 외(2016).

## 2) 조직관리 확대내역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조직관리에 관한 다양한 승인권 등의 폐지와 이양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와 정원관리에 관한 중앙정부의 승인권 등은 2014년 이후부터 다수는 폐지되고, 일부는 이양 또는 위임의 방식으로 지방으로 이관되었음
-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와 정원관리에 관한 각종 승인권한의 구체적 조치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음
  - 2004년에는 한시기구의 설치 승인권과 기술직렬 조정 승인권 등이 폐지되었고, 2005년에는 합의제기관 설치 승인권 등이 폐지되었으며, 2006년에는 4급 이상 정원책정 승인권이 폐지되었고, 2008년에는 시군구 본청 한시기구와 소속기관 상위직급 책정 협의권이 시도로 이양되고 5급 이하 결원보충 승인권이 시도로 위임되었음

【표 2-4】 기구설치권 및 정원관리권 이양실적

구분	폐지대상	조치내용	비고
기구·정원 책정관련 승인제도 (14개)	- 한시기구 설치 승인권	폐지	2004.12
	- 기술직렬 조정 승인권	폐지	2004.12
	- 합의제기관 설치 승인권	폐지	2005. 4
	- 자문기관 설치 승인권	폐지	2005. 4
	- 직속기관 설치 승인권	폐지	2005. 4
	- 출장소 설치 승인권	폐지	2005. 4
	- 사업소 설치 승인권	폐지	2005. 8
	- 시도 5급 정원책정 승인권	폐지	2005. 2
	- 동장 정원책정 승인권	폐지	2005. 2
	- 별정직 정원책정 승인권	폐지	2005.12
	- 4급 이상(시군구 5급) 정원책정 승인권	폐지	2006.12
	- 보정정원 초과 정원책정 승인권	폐지	2006.12
	- 시군구 본청 한시기구와 소속기관 상위 직급(국이 있는 곳 4급, 없는 곳 5급) 책정 협의권	시도 이양	2008. 7
- 5급 이하 결원보충 승인권	시도 위임	2008. 9	
법령상 조직운영	- 표준정원 책정기준	폐지	2006.12
	- 본청기구 설치기준	일부 폐지(시도 및 국이 있는	2007.12

구분	폐지대상	조치내용	비고
기준 (3개)		시군구의 과 단위 설치기준 (폐지)	
	- 직급, 직종별 정원책정 기준	폐지(지자체 조례로 이양)	2008. 7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5).

### 3. 농업조직 정책분석

#### 1) 농촌진흥기구 경과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농업관련 행정조직은 전술한 바와 같이 농업정책기구와 농업진흥기구로 구분되고 있음
  -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는 공히 「지방자치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농업정책기구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관할에 두는 여타의 보조기관과 마찬가지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조례에 이양되어 있으나, 농촌진흥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여타의 보조기관과 달리 농촌진흥기구는 「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그 설치가 규정되고 있는 까닭임
- 농촌진흥기구는 지방자치의 실시 등에 따라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되어 왔음
  - 지방자치의 부활 이전에는 도의 행정기구의 하나로 운영되었으며,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에 따라 직할시와 도의 행정기구와 병렬적인 행정기구로 변경되고, 1995년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과 더불어 직속기관으로 변경되었으며, 1998년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직속기관의 지위를 유지하되 명칭이 기존의 농촌진흥원(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로 개칭되었음

[표 2-5] 농촌진흥기구의 설치경과

관련법령	법령체계	비고
「직할시와 도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199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 목적</li> <li>■ 제2조 직할시</li> <li>■ 제3조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항 도 농촌진흥원 설치</li> </ul> </li> <li>■ 제4조 과 등의 설치</li> <li>■ 제5조 실장·담당관·국장·과장</li> <li>■ 제6조 공무원의 정원</li> </ul>	농촌진흥원 (도 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199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장 총칙</li> <li>■ 제2장 직할시와 도의 행정기구</li> <li>■ 제3장 지방농촌진흥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조(도 농촌진흥원)</li> <li>- 제7조(직할시·시·군 농촌지도소)</li> </ul> </li> <li>■ 제4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li> <li>■ 제5장 지방공무원교육원</li> </ul>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장 총칙</li> <li>■ 제2장 시·도의 기구</li> <li>■ 제3장 시·군·자치구의 기구</li> <li>■ 제4장 직속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조(지방농촌진흥기구)</li> <li>- 제12조(지방공무원교육원)</li> </ul> </li> <li>■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li> <li>■ 제6장 보칙</li> </ul>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8.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장 총칙</li> <li>■ 제2장 시·도의 기구</li> <li>■ 제3장 시·군·구의 기구</li> <li>■ 제4장 시·도,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조의3(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li> <li>- 제11조(지방농촌진흥기구)</li> <li>- 제11조의2(지방공립대학 등)</li> <li>- 제12조(지방공무원교육원)</li> <li>- 제12조의2(보건환경연구원 등)</li> <li>- 제12조의3(사업소 및 출장소)</li> </ul> </li> <li>■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li> <li>■ 제6장 보칙</li> </ul>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직속기관)

관련법령	법령체계	비고
<p>「직할시와 도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1990.12.31)</p>	<p>제3조(도) ⑬ 도 농촌진흥원에 서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두되, 그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lt;개정 1990·12·31&gt; 1. 서무과는 서무·문서·인사·관인관수·예산·회계·용도·청사관리 기타 원내 각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2. 시험국은 농촌진흥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시험·연구사업을 분장한다. 3. 지도국은 농촌진흥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지도사업과 동조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수련사업을 분장한다. 4. 삭제 &lt;1990·12·31&gt;</p>	
<p>「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1991.2.1)</p>	<p>제6조 (도 농촌진흥원) ①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 지도사업 및 농민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촌진흥원을 둔다. ② 도 농촌진흥원에 원장을 두되,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도 농촌진흥원에 총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두되, 그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과는 서무·문서·인사·관인관수·예산·회계·용도·청사관리 기타 원내 각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2. 시험국은 농촌진흥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시험연구사업을 분장한다. 3. 지도국은 농촌진흥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지도사업과 동조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수련사업을 분장한다. ④ 도 농촌진흥원의 총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농촌지도업무는 담당하는 국장·과장은 농촌지도관으로, 농사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조 (직할시·시·군 농촌지도소) ①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직할시장·시장·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둔다. ② 농촌지도소에 소장을 두되,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농촌지도소의 지소를 둘 수 있다. ④ 농촌지도소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p>	
<p>「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5.1.1.)</p>	<p>제11조 (지방농촌진흥기구) ①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촌진흥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장 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둘 수 있으며, 농촌지</p>	

관련법령	법령체계	비고
	<p>도시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p> <p>③ 농촌진흥원에는 원장(농촌지도소에는 소장)을 두며, 원장은 도시사(소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④ 농촌진흥원에는 총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두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p> <p>⑤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그 하부조직과 지소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p> <p>⑥ 시·도지사는 농촌진흥원의 하부조직이나 농촌지도소 및 그 하부조직을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국가공무원인 연구·지도직 공무원 정원의 증감이 수반되는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⑦ 농촌진흥원 및 농촌지도소에 두는 원장·소장·국장·과장등의 직급은 별표3과 같다.</p>	
<p>「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8.8.31.)</p>	<p>제11조 (지방농촌진흥기구) ①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시사 소속하에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개정 1998·8·31〉</p> <p>②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 소속하에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7·2·4, 1998·8·31〉</p> <p>③ 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원장은 도시사(소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8·8·31〉</p> <p>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및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8·8·31〉</p> <p>⑤ 농업기술원에 국 또는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과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2·4, 1998·8·31〉</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7·2·4, 1998·8·31〉</p> <p>⑦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등 국가</p>	

관련법령	법령체계	비고
	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1997·2·4, 1998·8·31> ⑧ 농업기술원 및 종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 및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3과 같다.<개정 1998·8·31>	

## 2) 농촌진흥기구의 운영근거

- 농촌진흥기구인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의거하여 해당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원칙적으로 광역단위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기초단위의 시·군에 1개씩 설치하되, 시·군이 폐지할 경우에는 광역시장과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기술센터의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하고, 관장기능은 연구개발사업과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으로 하며, 기구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음

**[표 2-6]**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법제

구분	내용
농기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 제113조, 「농촌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li> </ul> </li> <li>■ 설치단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단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li> <li>- 기초단위: 시·군</li> </ul> </li> <li>■ 폐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li> <li>-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li> </ul> </li> </ul>

구분	내용
농기센터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li> <li>-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소관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설치)</li> </ul>
농기센터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장기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li> <li>- 연구개발사업</li> <li>- 농촌지도사업</li> <li>- 교육훈련사업</li> <li>- 국제협력사업</li> </ul>
농기센터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구편제</li> <li>- 소장-과·담당관</li> <li>■ 직위직급</li> <li>- 소장: 지방농촌지도관</li> <li>- 과장·담당관: 지방농촌지도관</li> </ul>





# 제3장

##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실태분석

---

제1절 분석설계

제2절 세종시 조직관리 특성

제3절 세종시 농업관련 수요변화

제4절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현황

제5절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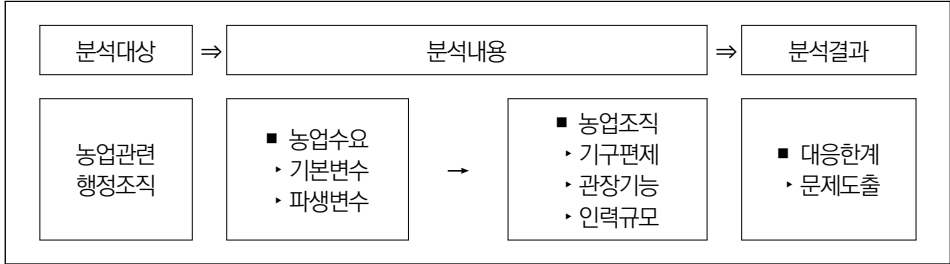


## 제3장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실태분석

### 제1절 분석설계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관련분야의 수요에 최적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행정조직의 설치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해당분야의 관련수요에 대응하여 수요자의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임
-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현행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농업관련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현행의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의 파악을 통해서 적절한 개선대안의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을 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분야의 행정수요의 분석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조직의 기구편제와 관장기능 및 인력규모 등을 살펴보고, 행정수요와 관련조직의 부합성을 판단하여 그 한계를 도출하는 것임
  - 다만, 상기의 분석을 하기 이전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여타의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단층제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제요건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그림 3-1]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실태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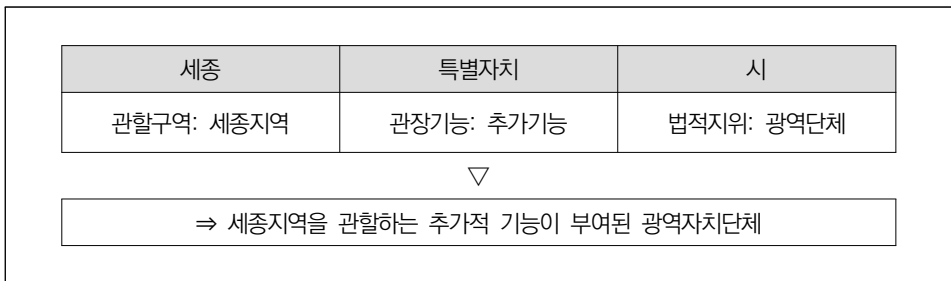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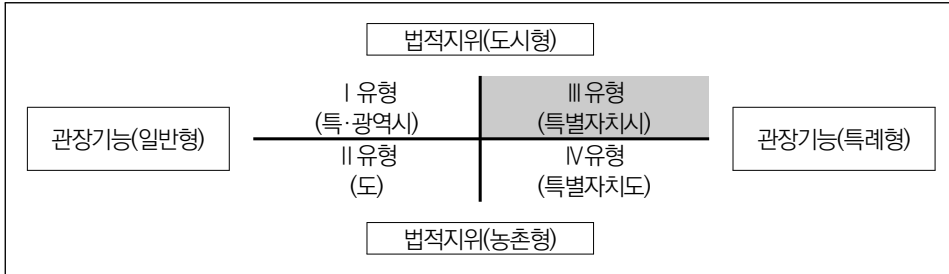
## 제2절 세종시 조직관리 특성

### 1. 법적 개념

-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특례가 적용된 광역자치단체임
  -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는 법적 지위의 기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이 되나, 기능 차이의 기준에서 여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추가적인 기능이 부여된 것으로 세종을 관할구역으로 추가적인 관장기능이 부여된 광역자치단체로 간주할 수 있음(금창호 외, 2019)
- 전술한 논의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개념은 특례가 부여된 도시형 광역자치단체로 규정할 수 있음
  - 즉, 법적 지위에서는 도와 같은 농촌형이 아닌 광역시와 같은 도시형 광역자치단체이면서 보유권한에서는 일반적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특례가 부여된 광역자치단체라는 것임

[그림 3-2] 세종특별자치시의 개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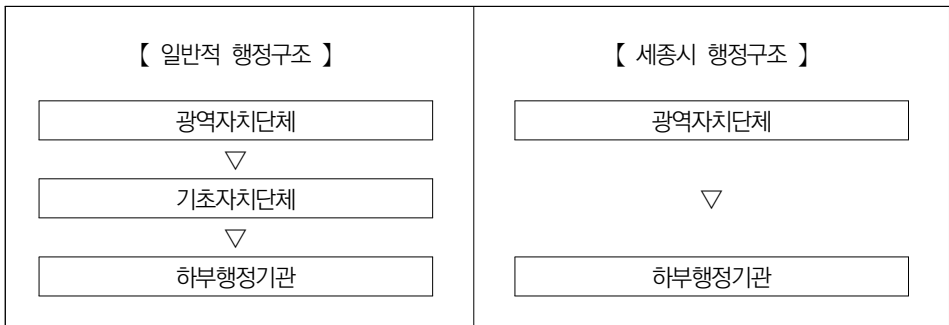


출처: 금창호 외(2019).

## 2. 구조특례

-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조는 기능적 및 인구적 특성을 감안하여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행정구조로 설계되고 있음
  - 기능적 측면에서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이 이전 배치됨으로써 행정기능의 집적현상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적 측면에서 2030년 50만 명의 계획인구를 예정함으로써 과소규모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유 하되, 관할구역 내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지 않고,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을 통해서 대민서비스를 공급하는 단일의 자치계층 구조로 설계됨

[그림 3-3]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조



출처: 금창호 외(2019).

### 3. 기능특례

- 세종특별자치시의 기능특례는 전술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행·재정 특례에 국한되어 있으며, 특례내용 역시 매우 제한적임
  - 기능특례는 크게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의사 광역자치단체라는 특성에 부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조직과 재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수준을 요구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요청에도 관련특례는 부여되고 있지 않음

**[표 3-1] 세종특별자치시의 기능적 특례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방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구 시의원: 16명</li> <li>▸ 비례대표 시의원: 지역구 시의원 정수의 10/100</li> </ul>
지방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의 타 지자체 위탁처리</li> <li>▸ 각종 시책의 우선 지원</li> <li>▸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청구 요건(1/100~1/20)</li> </ul>
지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반영</li> <li>▸ 공무원 정수의 5/100 범위에서 국가 등과 인사교류</li> <li>▸ 감사위원회 설치</li> </ul>
지방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의 통합부과</li> <li>▸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 및 차액의 25/100 이내의 보정(8년간)</li> <l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li> <li>▸ 기금존속 기간의 조례 제정</li> </ul>

구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도
근거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법
행정체제	• 자치 1계층 ※ 기초자치단체 없음	• 자치 2계층
자치단체 지위	•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행정기능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기능 동시 수행	• 광역기능 수행



구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도	
부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수: 2명</li> <li>직급: 타 시·도와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명(서울, 경기도는 3명)</li> <li>직급: 행정은 국가 고위 가급, 정무는 지방 1급</li> <li>※ 서울은 정무직(차관급)</li> </ul>	
실·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국 수: 5개</li> <li>직급: 3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국 수: 9~12개</li> <li>※ 서울 14, 경기 17</li> <li>직급: 3급(서울 1~3급)</li> </ul>	
의원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명(지역13, 비례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구(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 수로 하되, 14% 범위 내 조정가능, 최소 19명)</li> <li>비례(지역구 정수 10%, 최소3명)</li> </ul>	
의회 사무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회사무처 설치</li> <li>처장: 3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회사무처 설치</li> <li>처장: 2·3급(서울 1급, 부산 2급)</li> </ul>	
자치단체 세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특별자치시세(11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시세·광역시세(9개)</li> <li>도세(6개)</li> <li>※ 구세(2개), 시·군세(5개)</li> </ul>	
지방 교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재정수요액 - 기준 재정수입액 ≧ 보통교부세(조정을 적용)</li> <li>※ 출범후 8년간 재정수요액과 수입액 차이의 25% 이내 추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재정수요액 - 기준 재정수입액 ≧ 보통교부세(조정을 적용)</li> </ul>	
지방 교육 재정	보통 교부금	"	"
	담배 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배소비세 전출금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배소비세 45%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li> </ul>
	시세 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세총액의 3.6%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10%), 경기도·광역시(5%), 기타 도(3.6%)</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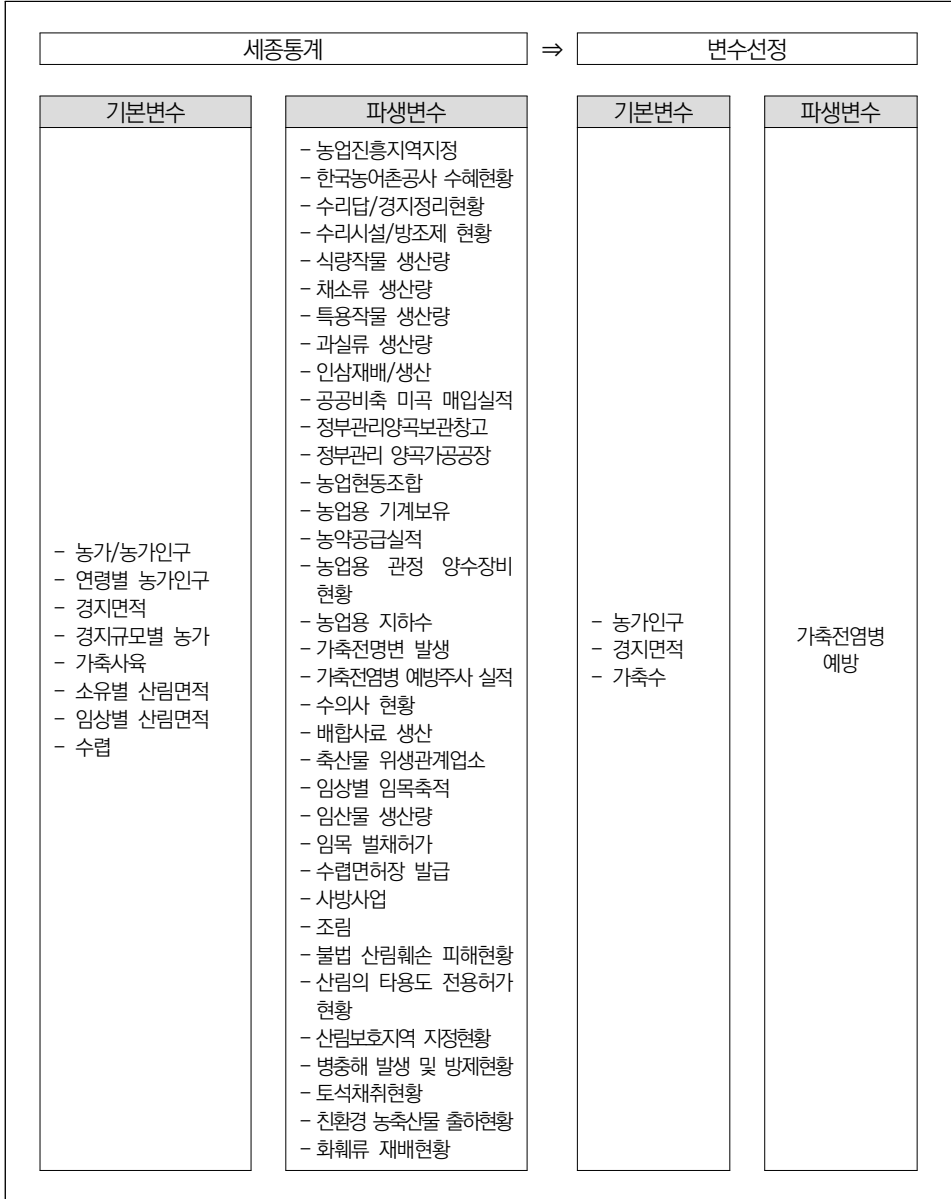
출처: 금창호 외(2019).

## 제3절 세종시 농업관련 수요변화

### 1. 농업관련 수요변수

- 일반적으로 행정수요는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특정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모든 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측정할 경우 기본적인 단위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인구규모를 활용하는 것임
- 그러나,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인구규모 이외에 행정력을 투입해야 할 다양한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범위를 확정할 경우 인구라는 기본변수 이외에 관할면적이나 주간인구, 65세 이상 인구, 사업체 수, 자동차수, 장애인수, 법정민원수, 외국인인구, 농경지면적 등 9개의 변수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됨
- 농업관련 수요변수를 분석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농업종사자라는 인구변수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행정력의 투입이 필요한 추가적 변수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통계연보(2018)」에서는 농림업의 통계분류를 43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구와 면적, 가축사육 등 기본변수와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농업용기계와 가축전염병 발생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분야 통계자료를 토대로 농업관련 수요변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기본변수로 농가인구와 경지면적 및 가축사육 수를 그리고 파생변수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선정하고자 함

[그림 3-4] 농업관련 수요변수 도출



## 2. 농업분야의 전망<sup>1)</sup>

### 1) 주요지표의 전망

- 농업분야의 주요지표를 1970년부터 2030년까지를 대상으로 20년을 주기로 예측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우선 농가호수와 농가인구의 추이는 지난 40년간 농가호수는 절반수준으로 그리고 농가인구는 2할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향후에는 감소속도가 다소 완화되어 2030년에 농가호수는 92만호로 농가인구는 173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지면적의 감소는 지난 40년 동안에도 완만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간척과 개간 등을 통한 신규농지의 조성 없이 농지의 순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농업부가가치는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보다는 정체 내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가소득의 추이는 농업소득이 정체되는 반면에 농외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3-2] 농업 총량지표의 추이와 전망(1970~2030)

구분	단위	1970	1990	2010	2020	2030
농가호수	천호	2,483	1,767	1,172	1,078	924
농가인구	천명	14,422	6,661	3,039	2,295	1,732
65세 이상 비율	%	4.9	11.5	35.3	45.2	51.4
경지면적	천ha	2,298	2,109	1,718	1,574	1,488
벼 재배면적	천ha	1,203	1,244	910	809	802
농업 부가가치	10억원	10,762	16,827	20,691	18,705	18,755
농가소득	만원	650	1,895	3,298	3,910	5,746
농외소득 비율	%	23.1	25.7	39.4	48.2	62.0

부: 1970~90년 수치는 농림수산물품 주요통계에 의함.

2010, 2020, 2030년 수치는 KREI-ASMO 추정치.

농업부가가치는 2005년 기준 가액. 농가소득은 GDP디플레이터(2005=100) 적용.

2020, 2030년 수치는 2010년 불변 가액

출처: 농촌경제연구원(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 1) 농업분야의 전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 2) 농산물 소비량 전망

- 1970년 이후 국민 1인당 주요 농산물 소비량의 추이와 향후 2030년까지의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쌀 소비량은 지난 40년 동안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여 2010년 1인당 73kg에서 향후의 감소속도를 감안하면 2030년에는 47kg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면, 과일소비는 빠른 증가속도를 보여서 1970년 대비 사과는 2배, 배는 7배나 증가하였으며, 채소류도 지금까지는 소비가 크게 늘었으나 앞으로는 감소추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이며, 육류소비는 지금까지의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3-3]** 국민1인당 주요 농산물 소비량 추이 및 전망(1970~2030)

(단위: kg/1인당)

구분	1970	1990	2010	2020	2030
쌀	130.5	120.8	73.0	59.7	46.7
콩	6.1	8.3	8.4	9.4	9.9
사과	5.2	11.5	10.7	11.0	11.0
배	1.1	2.5	7.9	7.4	7.4
배추	19.3	46.9	49.5	47.0	42.6
무	19.1	26.7	22.8	19.6	15.9
고추	1.4	1.8	4.0	4.0	3.7
마늘	1.8	6.5	7.5	7.9	7.6
쇠고기	1.6	4.1	9.1	12.0	13.2
돼지고기	3.6	11.8	19.5	22.6	24.5

주: 1970~90년 수치는 식품수급표에 의함.

2010, 2020, 2030년 수치는 KREI-ASMO 추정치.

출처: 농촌경제연구원(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 3) 농촌공간 전망

- 농촌공간의 변화를 2000년부터 2030년까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읍면단위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20.0%에서 2030년에는 1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농촌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의 43%에서 2030년에는 23%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생활편의시설은 빠르게 현대화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3-4]** 농촌공간 및 주거생활의 추이와 전망(2000~2030)

지표명	2000	2010	2020	2030
농촌인구(만명)	938	850	790	740
- 농촌인구/총인구 비율(%)	20.0	17.4	16	15
- 농가인구/농촌인구 비율(%)	43.0	36	30	23
농촌생활 편의시설				
-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	52.2	80	90	95
- 상수도 보급률(%)	22.4	50	70	80
- 자동차 보급률(%)	41.4	60	80	90
- PC보급율(%)	24.1	50	70	85

주: 농촌인구는 읍면단위 인구.

출처: 농촌경제연구원(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 4) 농촌관광 전망

-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농촌관광은 2005년에 15% 수준이었으나, 203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농촌관광의 내용도 유럽과 같이 단순한 도농교류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하는 경향이며, 경관농업과 휴양레저농업, 도시(정원)농업과 연계한 농촌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표 3-5] 농촌관광 수요의 추이 및 전망(2005~2030)**

(단위: 만명, %)

구분	국내여행 인구총량(A)	광의의 농촌관광 인구(B)	비중 (B/A)	협의의 농촌관광 인구(C)	비중 (C/A)
2005	25,779	3,867	15.0	464	1.8
2010	27,848	5,708	20.5	801	2.9
2015	29,414	8,426	28.6	1,308	4.4
2020	31,067	12,438	40.0	2,136	6.9
2030	59,468	27,102	45.6	5,692	9.6

출처: 농촌경제연구원(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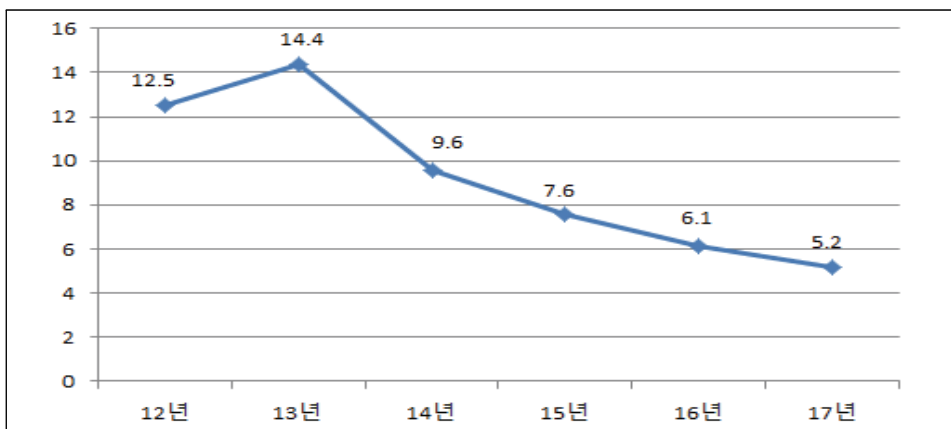
### 3. 수요변수별 변화분석

#### 1) 농가인구 분석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가인구는 2012년 출범 이래 201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전체인구 대비 농가인구는 2012년 12.5%에서 2013년에 14.4%로 증가하였으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농가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비율의 감소뿐만 아니라 절대인구 규모 역시 점차 감소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관련 행정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3-6] 세종특별자치시 농가인구의 추이

구분	전체 인구(명)	농가 인구(명)	비율(%)
2012	115,388	14,372	12.5
2013	124,615	17,939	14.4
2014	158,844	15,312	9.6
2015	214,364	16,335	7.6
2016	246,793	14,982	6.1
2017	284,225	14,821	5.2



출처: 세종통계연보(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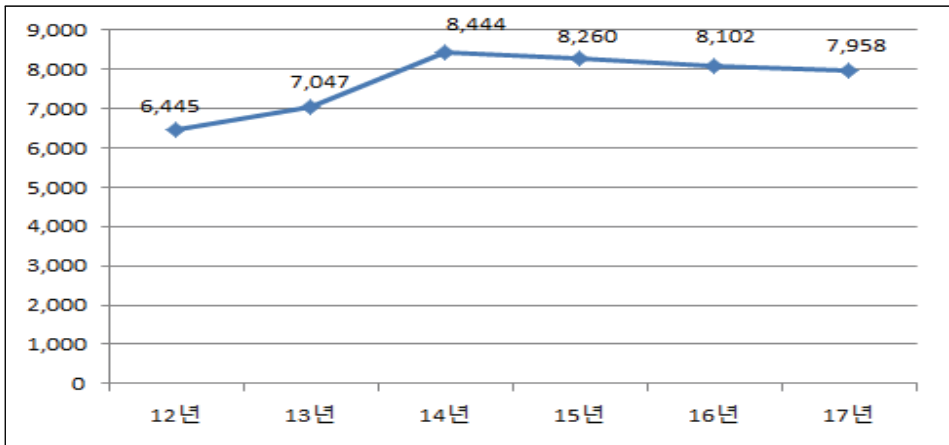


## 2) 경지면적 분석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지면적은 2012년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경지면적은 2012년 6,445ha에서 2014년 8,444ha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7,958ha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2017년 현재의 경지면적이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당시인 2012년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면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표 3-7] 세종특별자치시 경지면적 추이

구분	합계(ha)	전(ha)	답(ha)
2012년	6,445	4,059	2,386
2013년	7,047	4,195	2,852
2014년	8,444	4,968	3,476
2015년	8,260	4,785	3,475
2016년	8,102	4,616	3,486
2017년	7,958	4,513	3,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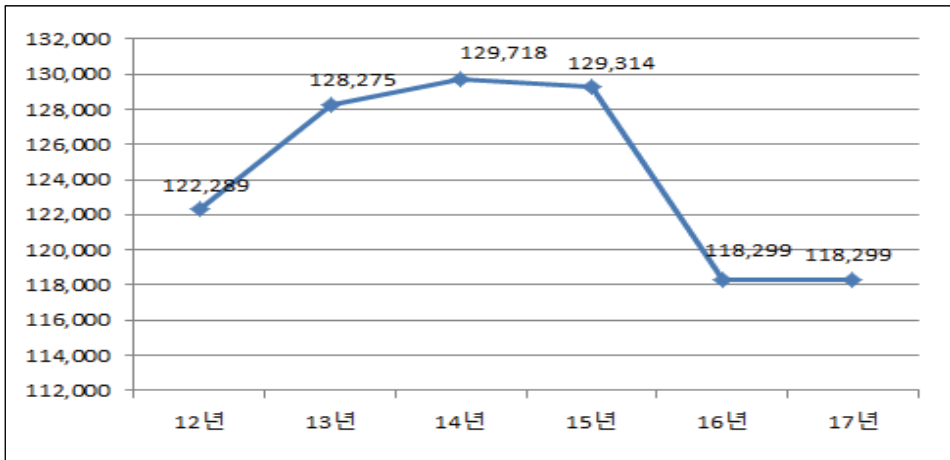
출처: 세종통계연보(2018).

### 3) 가축수 분석

-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축수는 한육우와 젓소 및 돼지 등 주요 가축을 대상으로 2012년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가축수는 2012년 122,289마리에서 2014년 129,718마리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이를 보여 2017년 현재 118,299마리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전술한 농가인구나 경지면적과 달리 가축수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당시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8] 세종특별자치시 가축수 추이

구분	합계(마리)	한육우(마리)	젓소(마리)	돼지(마리)
2012년	122,289	28,068	5,364	88,857
2013년	128,275	25,072	5,050	98,153
2014년	129,718	24,359	5,252	100,107
2015년	129,314	23,869	4,878	100,567
2016년	118,299	23,953	4,641	89,705
2017년	118,299	23,953	4,641	89,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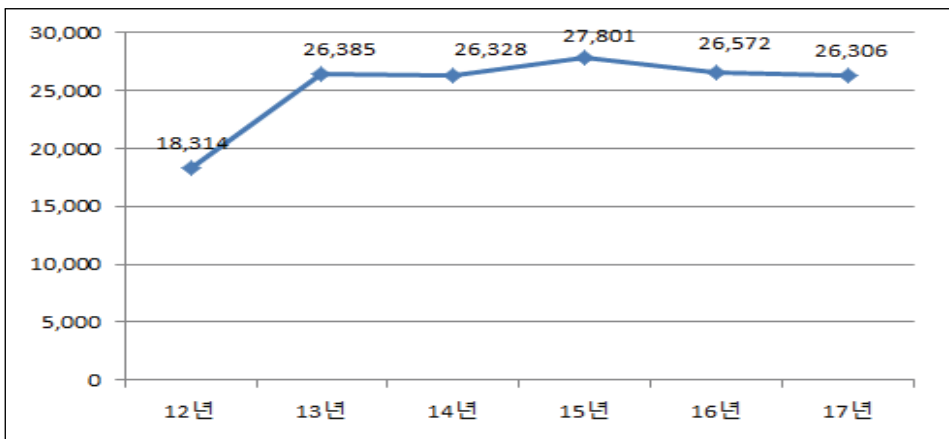
출처: 세종통계연보(2018).

#### 4) 가축전염병 분석

-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축전염병은 예방주사 실적을 중심으로 2013년부터 증가하여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적은 2012년 18,314회였으나, 2013년에는 26,385회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매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적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당시인 2012년 보다 이후 예방주사 횟수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나아가 비슷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수요량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표 3-9] 세종특별자치시 가축전염병 예방실적 추이

구분	합계	탄저/기종저	소전염성 비기관염	돼지전염성 위장병	기타
2012년	18,314	4,800	3,500	10,000	14
2013년	26,385	3,200	4,200	18,850	135
2014년	26,328	3,200	4,200	18,850	78
2015년	27,801	3,200	4,200	18,850	1,551
2016년	26,572	3,200	4,200	18,850	322
2017년	26,306	3,200	4,200	18,850	56



출처: 세종통계연보(2018).

#### 4. 수요변화 종합

- 전술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수요변화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수요감소가 나타나고 있음
  - 농가인구와 경지면적, 가축수 및 가축전염병 예방실적 등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당시에 비해서는 높으나,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는 감소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 전반적인 특징임
  - 특히,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변수로는 농가인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감소추이는 가축전염병 예방실적임

[표 3-10] 세종특별자치시 가축전염병 예방실적 추이

구분	내용
농가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소추이</li> <li>- 12.5%(2012) → 14.4%(2013) → 5.2(2017)</li> </ul>
경지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소추이</li> <li>- 6,445ha(2012) → 8,444ha(2014) → 7,958ha(2017)</li> </ul>
가축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소추이</li> <li>- 122,289마리(2012) → 129,718마리(2014) → 118,299마리(2017)</li> </ul>
가축전염병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소추이</li> <li>- 18314회(2012) → 27,801회(2015) → 26,306회(2017)</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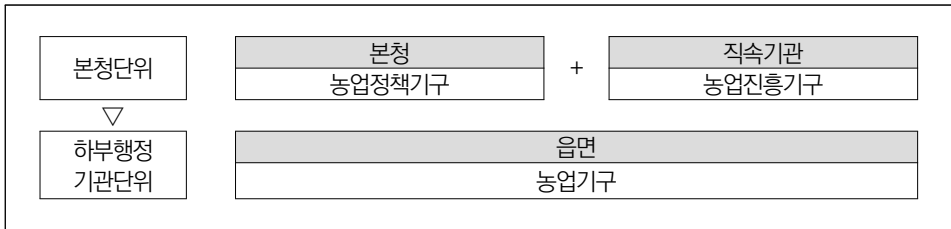
- 다만, 농지면적 및 농가인구 등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지자체 등과 달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점차 대도시로 성장하고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면서 도시농업 및 근교농업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비하여 가축사육이 가능한 면적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후 약 1/10로 감소하여 2019년 현재 전체면적의 1.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축산관련 수요는 감소할 것임

## 제4절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현황

### 1. 조직구조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구조는 전술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련 행정조직 모형에서 제3의 모형이 적용되고 있음
  - 즉,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와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모형으로 본청에 농업정책기능을,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진흥기능을 그리고 읍면 단위에 농업관련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임

[그림 3-5]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설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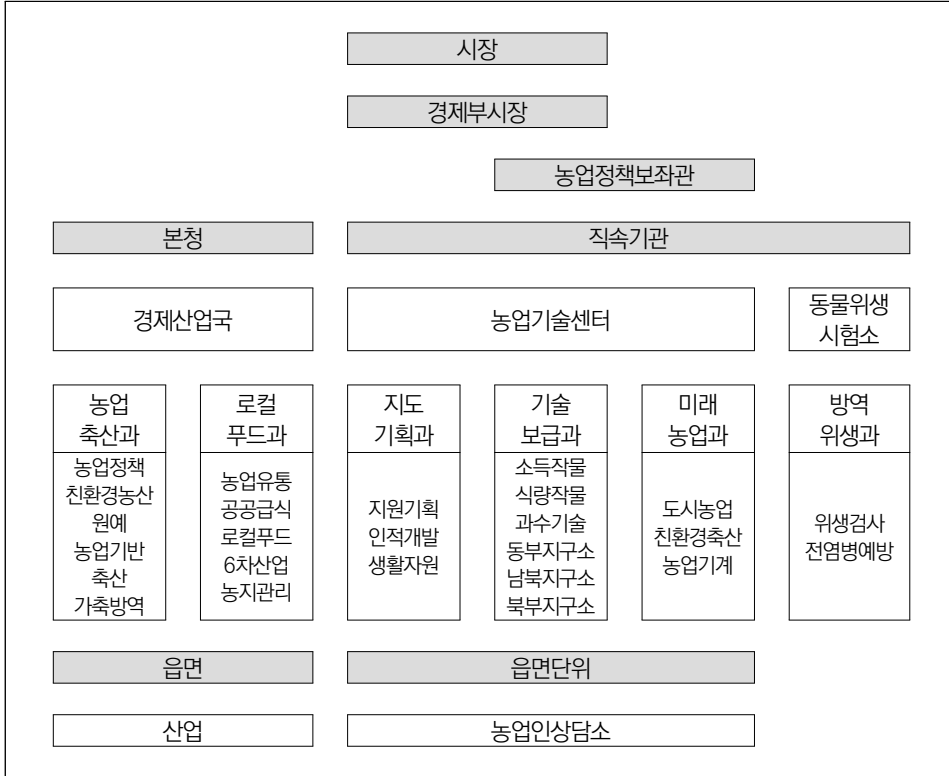
### 2. 농업관련 행정조직 현황

#### 1) 행정기구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기구는 기본적으로 전술한 제3모형을 근거로 편제되어 있음
  - 본청에 농업정책기구를 직속기관에 농업진흥기구를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 농업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제3모형의 기본구조로 편제를 하되,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농업정책보좌관을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가축방역 관련기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정책기구는 경제산업국 관할의 농업축산과와 로컬푸드과의 2개 과로 편제되어 있음
  - 농업축산과는 농업분야의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농업정책, 친환경농산, 원예, 농업기반, 축산 및 가축방역 등 6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고, 그리고 로컬푸드과는 농업분야의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농업유통, 공공급식, 로컬푸드, 6차산업 및 농지관리 등 5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음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농촌진흥기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관할의 지도기획과 기술보급과 및 미래농업과의 3개 과로 편제되어 있음
  - 지도기획과는 농업분야 인력개발을 수행하는 기구로 지원기획과 인적개발 및 생활지원 등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보급과는 농업분야 기술의 개발·보급을 수행하는 기구로 소득작물과 식량작물, 과수기술, 동부지구소, 남부지구소 및 북부지구소 등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농업과는 도시농업과 친환경축산 및 농업기계 등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관련 행정기구 현황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2020).

## 2) 관장기능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기구의 관장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서 행정기구별로 다음과 같이 관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청의 농업정책보좌관은 농업정책에 대한 보좌업무를, 농업축산과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농업기반, 축산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로컬푸드과는 농산물유통과 로컬푸드 육성, 6차 산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고 있음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획과는 농업인교육과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술보급과는 소득작물과 식량작물 및 과수기술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미래농업과는 도시농업과 친환경축산 및 농업기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고 있음
- 동물위생시험소의 방역위생과는 위생검사와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은 농지관리, 농정, 농산, 과수·특작, 산림보호, 축산, 농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고 있음

[표 3-1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행정기구의 관장기능

부서		관장업무
경제 부시장	농업정책 보좌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 및 축산 관련 사항</li> <li>2. 로컬푸드사업 관련 사항</li> <li>3.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항</li> <li>4. 동물위생사업 관련 사항</li> </ol>
경제 산업국	농업 축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정책의 종합 기획·조정</li> <li>2. DDA / FTA 등 농업분야 대책 수립·시행</li> <li>3.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li> <li>4.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li> <li>5. 농업분야 정부합동감사 총괄</li> <li>6. 농업인 단체(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등) 육성</li> <li>7.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 총괄 및 사업예산 신청</li> <li>8.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li> <li>9.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및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li> <li>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운영</li> <li>11. 명예농업부시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2. 농업인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지원</li> <li>1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li> <li>14. 농업법인 실태 관리</li> <li>15. 귀농귀촌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li> <li>16.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li> <li>17.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li> <li>18. 정부양곡 보관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li> <li>19. 농기계 등 농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li> <li>20. 농업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li> <li>2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li> <li>22.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li> </ol>



부서	관장업무
	23.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에 관한 사항 24. 비료생산업 및 농약판매업 등록 및 지도 관리 25. 과수산업육성지원 및 관리 26. 근교농업육성에 관한 사항 27. 원예생산단지 육성 및 관리 28. FTA 대응 고품질 시설현대화 추진 29. FTA 원예작물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추진 30. 시설채소 육성 및 관리 31. 시설원에 고품질현대화 추진 32. 노지채소 및 인삼·화훼산업 육성 33.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34. 종자산업 육성 및 종자업 등록 관리 35. 농촌개발 종합 기획·조정 36.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농공단지)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제외) 37. 농업용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38. 경지정리사업, 관개시설 개·보수 39. 농업생산기반 시설 설치·관리(경지정리 외 지역 배수로, 농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외) 40. 농업시설분야 수해(한해) 대책 수립 및 복구 41.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42. 토지개량사업 43. 농촌현장포럼 및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 44. 국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관리 4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 46. 충광농원 악취 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 총괄 47. 축산 관련 업소 및 단체 지도 육성 48. 가축개량, 가축통계 조사 및 그 밖의 가축지원 대책 추진 49. 낙농산업 발전 및 우유수급 안정 대책 추진 50.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1. 축산 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복구 52.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품질 고급화사업 추진 53. 축산물가공업·도축업·집유업·보관·운반·판매업 허가 관리 54.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5. 가축 수매, 축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56. 가축방역계획 수립 및 추진 57. 가축전염병(구제역, 시 등) 피해 관련 사후관리 및 환경관리 58. 그 밖에 농업정책, 친환경농산, 원예, 농업기반, 축산,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로컬	1. 로컬푸드 종합 기획·조정

부서	관장업무
푸드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 조직화</li> <li>3. 로컬푸드 민관 거버넌스 구축(핵심리더 육성)</li> <li>4. 직매장 설치·운영, 가공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li> <li>5.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li> <li>6. 로컬푸드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li> <li>7. 세종로컬푸드(주) 지도·감독·지원에 관한 사항</li> <li>8. 농산물 유통정책에 관한 사항</li> <li>9. 지역생산 농·특산물 판로(국내외) 개척 등 유통 지원</li> <li>10.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li> <li>11. 품목별 우수 상품 인증 기준 마련 및 관리</li> <li>12.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및 공동브랜드 홍보에 관한 사항</li> <li>13.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4.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li> <li>15. 농특산물 상표(브랜드) 제작 관리 등 총괄</li> <li>16.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에 관한 사항</li> <li>17. 두레농장 운영 관리·감독</li> <li>18. 공공급식 기획·조정</li> <li>19. 공공·학교급식 관련 자치법규 제정·개정</li> <li>20.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li> <li>21. 지역농산물 현물 공급에 관한 사항</li> <li>22.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형 통합전산시스템 구축·관리</li> <li>23.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li> <li>24. 학교급식수발주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li> <li>25. 지역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에 관한 사항</li> <li>26. 6차산업 종합 발전계획 수립·추진</li> <li>27. 6차산업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 운용</li> <li>28. 6차산업 인증 촉진·관리</li> <li>29.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추진(농공단지 제외한다)</li> <li>30. 농업과 관련된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li> <li>31. 식생활교육 등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li> <li>32.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li> <li>33. 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사업</li> <li>34.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육성 및 지원</li> <li>35. 농어촌 민박관리</li> <li>36.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사항</li> <li>37. 농산물 가공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li> <li>38. 전통식품 등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li> <li>39. 주류제조 면허 추천 및 관리</li> <li>40. 도토리파크 조성 및 운영</li> <li>41. 농지보전 등 「농지법」에 관한 사항 총괄</li> </ol>

부서	관장업무
	42. 농지전용 허가(협의·변경),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3. 농업진흥지역·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관리 44. 그 밖에 농업유통, 공공(학교)급식, 로컬푸드, 농촌 융복합산업화, 농지 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 기술센터	지도 기획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조정·평가</li> <li>2.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연말정산을 포함한다) 등</li> <li>3. 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지도인력 관리</li> <li>4. 지도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li> <li>6. 물품, 차량,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li> <li>7. 농촌지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li> <li>8.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9. 농촌지도사업 관련 중앙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li> <li>10. 농업인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li> <li>11. 농업기술 홍보에 관한 사항</li> <li>12.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회 육성에 관한 사항</li> <li>13. 농촌청소년 등 농업 후계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li> <li>14. 농업인 대학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li> <li>15. 품목별 연구회 육성지도</li> <li>16.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지원</li> <li>17.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 및 지도</li> <li>18. 농촌생활개선 사업 계획 및 평가</li> <li>19. 농업·농촌 자원 발굴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li> <li>20. 농산물 가공기술 및 식품산업 연구개발 지도에 관한 사항</li> <li>21. 전통 식문화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li> <li>22. 생활자원 연구회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li> <li>23. 농촌체험농장 및 교육농장 육성</li> <li>24. 농식품 가공교육, 창업지도 및 농업인기술센터 운영·관리</li> <li>2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 개발에 관한 업무</li> </ol>
기술 보급과	1. 식량작물 기술보급 및 기술지도 2. 전작물 기술보급 및 기술지도 3. 우량종자 보급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작물 생육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병해충 예찰답 및 전시포 운영 6. 영농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영농현장 모니터 요원 운영 8. 로컬푸드 생산기술 지도 및 근교농업 육성 및 지도 9.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10. 농작물 기상재해에 관한 사항

부서	관장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시설채소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li> <li>12. 노지채소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li> <li>13. 화훼작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li> <li>14. 특용작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li> <li>15. 경제작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li> <li>16. 에너지 절감 농업기술 및 지속농업 기술보급 지도</li> <li>17. 식량작물 연구회 육성 기술지도</li> <li>18. 경제작물 연구회 육성 기술지도</li> <li>19. 새기술 실증포 운영</li> <li>20. 과수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li> <li>21. 과수 종합기술지도 사업 추진</li> <li>22. 과수 돌발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li> <li>23. 과수 꽃가루 은행 운영</li> <li>24. 과수 연구회 육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li> <li>25. 읍·면 지구지소 운영·지도</li> <li>26. 읍·면 농업인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li> <li>27. 강소농 육성에 관한 사항</li> <li>28. 농축산물의 경영·유통 정보 및 관리 기술지원</li> <li>29. 농가경영 조사 및 소득 분석</li> <li>30. 그 밖에 농업기술 보급 개발에 관한 업무</li> </ol>
미래 농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농업·생활원에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li> <li>2. 도시농업 교육과 시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농업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경관농업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li> <li>4. 도시농업박람회 추진에 관한 사항</li> <li>5. 귀농·귀촌 농업인 상담 및 기술지원</li> <li>6. 원예학습원 운영 관리</li> <li>7. 도시농업관련 연구회 육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li> <li>8. 친환경농업기술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9. 친환경 관리실 및 축산관리실 운영</li> <li>10. 새로운 품종에 대한 실증시험</li> <li>11.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도에 관한 사항</li> <li>12. 축산 기술보급 및 사양관리기술 지도</li> <li>13. 특수가축 기술보급 및 사양관리기술 지도</li> <li>14. 사료작물(초지) 재배기술 지원</li> <li>15. 농업미생물 생산 보급에 관한 사항</li> <li>16. 보조사료(생균제) 생산 보급에 관한 사항</li> <li>17. 친환경농업, 축산 연구회 육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li> <li>18.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li> <li>19. 토양검정 분석 및 비료사용 처방</li> <li>20. 농산물 안전성 분석지원</li> </ol>

부서	관장업무
	21.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22. 농기계 임대사업 세외수입 관리 23. 농기계 임대사업 분점운영 관리 24.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 25. 그 밖에 도시농업 개발에 관한 업무
동물위생 시험소	방역 위생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축방역·축산물위생에 관한 검사·조사 및 종합기획</li> <li>2. 구제역 및 AI(조류인플루엔자) 검사</li> <li>3. 브루셀라, 결핵병, 가축 혈청검사 및 질병 병성감정</li> <li>4. 돼지 열병, 일본뇌염 및 오제스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검사</li> <li>5. 닭 추백리 및 닭 뉴캐슬병 검사</li> <li>6. 양축농가 모니터링 검사 및 교육</li> <li>7.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 운영</li> <li>8. 시험·연구사업 및 기타 가축 질병관리</li> <li>9. 가축 매몰지 지도·점검</li> <li>10. 축산물 미생물 검사</li> <li>11. 원유 검사 공영화 및 젖소 유방염 검사</li> <li>12. 책임 수의사·검사원 지도·감독 및 위생교육</li> <li>13. 광우병 등 전염성해면상뇌증 예방 및 검사</li> <li>14. 한우유전자, DNA 동일성 검사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li> <li>15. 축산물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 의약품 검사</li> <li>16. 항생제 내성균, 중금속, 멜라민 검사</li> <li>17. 부정 축산물 감식</li> <li>18.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사</li> <li>19. 로컬푸드 축산물 인증을 위한 안전성 검사</li> <li>20. 조사료 품질 검사</li> <li>21. 젖소 능력 검정에 관한 검사</li> <li>22. 축산물 위생 감시 및 HACCP 조사·평가</li> <li>23. 종돈장·종계장 위생관리</li> <li>24. 식용란 및 산란노계 살충제 검사</li> <li>25. 양봉, 사슴 등 기타가축 검진 및 관리</li> <li>26. 야생동물질병진단기관 운영</li> <li>27.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li> <li>28.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기관 운영</li> <li>29.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li> <li>30. 반려동물·유실·유기동물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및 검사</li> <li>31. 가축질병 피해 감축을 위한 시책사업</li> <li>32. One-health 기반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협의체 운영</li> <li>33.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li> <li>34.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li> <li>35. 그 밖에 위생검사, 전염병예방 등에 관한 사항</li> </ol>

부서	관장업무
하부 행정기관	<p style="text-align: center;">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읍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li> <li>2. 주민 여론·동향 및 리·반 관리·운영</li> <li>3. 선거, 통계, 문화예술, 문화재 보호, 체육지원, 적십자회비 모금</li> <li>4.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법정단체 육성 지원</li> <li>5.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유재산 관리, 시장 사용료 징수 등 재무에 관한 사항</li> <li>6. 주민생활지원, 장애인 등록관리, 보훈대상자 관리, 사회복지, 방역, 자활 지원사업, 불우이웃돕기, 자활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li> <li>7. 노인·가정·여성·아동복지, 행여(환)자 및 사망자 처리, 부랑인 관리</li> <li>8. 총령탑 관리, 묘지 관리, 자원봉사 운영, 청소년증 발급</li> <li>9.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방위, 학사, 인감, 수형인명표 관리, 신원조회 회보, 제증명 발급 등</li> <li>10. 옥외광고물,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 공중화장실 관리</li> <li>11. 농지관리, 농정, 농산, 과수·특작, 산림보호, 축산, 농산물 유통 등</li> <li>12. 노상적치물관리, 도로관리, 토지형질변경관리, 도시공원관리, 가로등 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새마을시설물 관리, 부동산소유사실 확인 증명, 하천 실경작 확인 증명, 재해대책 및 재해피해 확인 발급</li> <li>13. 생활민원 처리, 기동봉사에 관한 사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면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li> <li>2. 주민 여론·동향 및 리·반 관리·운영</li> <li>3. 선거, 통계, 문화예술, 문화재 보호, 체육지원, 적십자회비 모금</li> <li>4.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법정단체 육성 지원</li> <li>5.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유재산 관리, 시장 사용료 징수 등 재무에 관한 사항</li> <li>6. 주민생활지원, 장애인 등록관리, 보훈대상자 관리, 사회복지, 방역 자활 지원사업, 불우이웃돕기, 자활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li> <li>7. 노인·가정·여성·아동복지, 행여(환)자 및 사망자 처리, 부랑인 관리</li> <li>8. 묘지 관리, 자원봉사 운영, 청소년증 발급</li> <li>9.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방위, 학사, 인감, 수형인명표 관리, 신원조회 회보, 제증명 발급 등</li> <li>10. 옥외광고물,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 공중화장실 관리</li> <li>11. 농지관리, 농정, 농산, 과수·특작, 산림보호, 축산, 농산물 유통 등</li> <li>1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li> <li>13. 생활민원 기동처리, 기동봉사에 관한 사항</li> </ol>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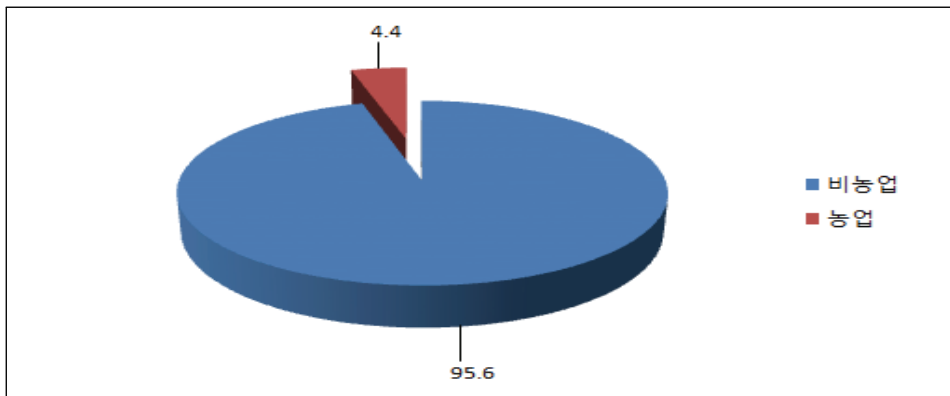
### 3) 인력규모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규모는 2020년 현재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정원기준으로 총 인력규모는 96명이고, 농업축산과에 34명, 로컬푸드과에 21명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4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직렬별로는 일반직이 61명이고, 지도직이 34명이며, 연구직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0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공무원 2,164명 대비 농업관련 인력규모의 비중은 4.4%에 불과함

[표 3-1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행정기구의 인력규모

기준: 정원(현원)

구분	합계	일반직				지도직		연구직	
		가급	4급	5급	6급 이하	지도관	지도사	연구관	연구사
계	96(95)	1(1)	2(2)	10(10)	48(44)	4(4)	30(30)	1(1)	1(1)
농업축산과	34(32)	1(1)	1(1)	5(5)	26(24)			1(1)	1(1)
로컬푸드과	21(22)		1(1)	5(5)	15(16)				
농업기술센터	41(41)				7(7)	4(4)	3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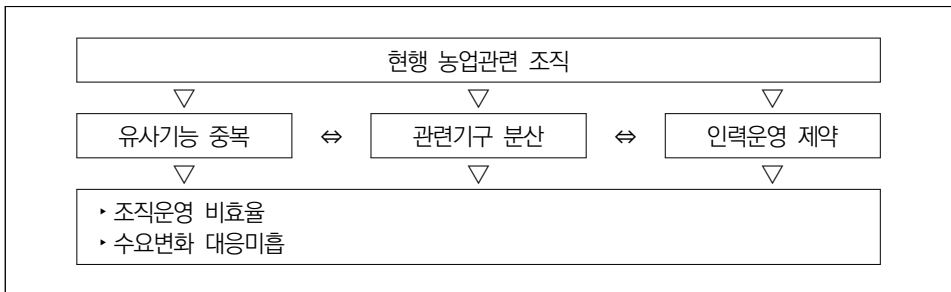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내부자료(2020).

## 제5절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한계

- 전술한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수요와 행정조직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능적 측면과 기구적 측면 및 인력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발생되고 있음
  - 우선,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수요는 기본변수와 파생변수 모두에서 출범 당시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을수록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업관련 행정수요의 점유율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측면에서는 관련기구의 분리구조에 따라서 기능적 중복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기구적 측면에서도 관련기능 차이에도 불구하고 광의의 농업기능을 각기 다른 기구로 분리 관장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인력적 측면에서는 총량적으로는 수요 부합성이 인정됨에도 배치운영에서는 제약성이 초래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운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요대응의 문제가 나타남
  - 기본적으로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분화에 따른 기능적, 기구적 및 인력적 비효율성이 결과적으로는 관련 행정수요의 양적 및 질적 대응을 제약하는 것임

[그림 3-기]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조직 운영한계







# 제4장

## 지자체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사례분석

---

제1절 사례대상 선정

제2절 농업관련 행정조직 사례분석

제3절 사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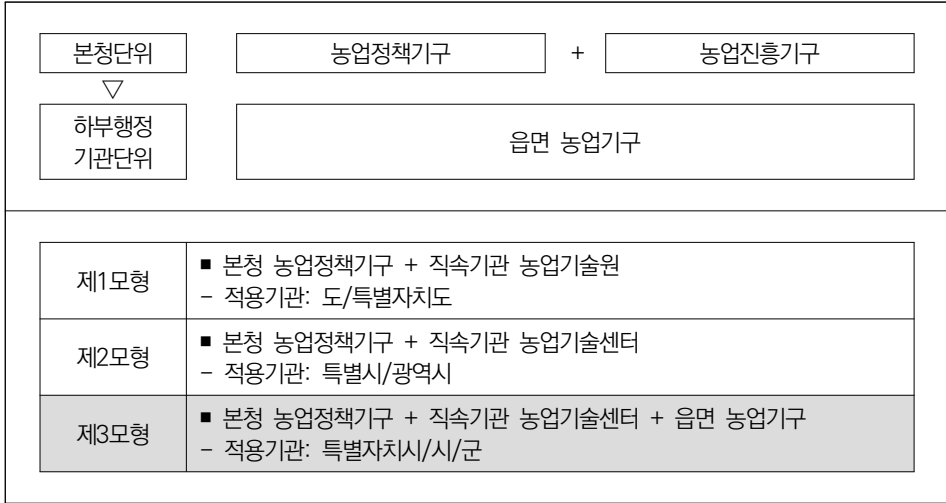
## 제4장 지자체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사례분석

### 제1절 사례대상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사례분석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 관련 행정조직의 개편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사례분석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개편대안 설계에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임
- 전술한 유형분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농업관련 행정조직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3개의 모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 농업관련 행정조직인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를 하나의 변수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을 다른 하나의 변수로 하여 단일 행정계층에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농업기술원)을 설치하는 유형과 단일 행정계층에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는 유형 및 다수 계층에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는 유형이 그것임
- 상기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설치유형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제3모형에 해당하고 있음
  - 본청 단위인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 단위인 읍면의 다수계층에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사례분석의 대상으로는 제3모형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인구규모에 따라서 기구설치 범위가 달라지므로 가급적 세종특별자치시와 유사한 인구규모를 보유한 시 또는 군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함

[그림 4-1] 사례분석의 대상



## 제2절 농업관련 행정조직 사례분석

### 1. 농업관련 행정조직 편제유형

- 농업관련 행정기구의 제3 편제모형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대상으로 농업기구 편제실태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군 단위의 농업정책기구와 농업진흥기구의 편제양식은 통합형1(본청→센터)과 통합형2(센터→본청) 및 분리형의 3가지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첫 번째 편제유형인 통합형1은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를 통합편제 하되, 본청의 농업정책기구를 농촌진흥기구를 관장하는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여 편제하는 것임
  - 통합형1의 기구편제 양식은 경기도의 고양시 등 6개 시군과 강원도의 춘천시를 비롯한 11개 시군, 충청남도의 공주시를 비롯한 3개 시군, 전라북도의 군산시를 비롯한 4개 시군, 전라남도의 여수시를 비롯한 7개 시군, 경상북도의 포항시를 비롯한 10개 시군, 경상남도의 창원시를 비롯한 18개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음
- 두 번째 편제유형인 통합형2는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를 통합하되, 직속기관의 농촌진흥기구를 본청으로 통합하여 편제하는 것임
  - 통합형2의 기구편제 양식은 경기도의 의정부시를 비롯한 10개 시군과 전라남도의 목포시에서 나타나고 있음
- 세 번째 편제유형인 분리형은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를 각각 본청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로 분리하여 편제하는 것임
  - 분리형의 기구편제 양식은 경기도의 수원시를 비롯한 15개 시군과 강원도의 강릉시를 비롯한 7개 시군, 충청북도의 청주시를 비롯한 11개 시군, 충청남도의 천안시를 비롯한 12개 시군, 전라북도의 전주시를 비롯한 10개 시군, 전라남도의 담양군을 비롯한 16개 시군, 경상북도의 안동시를 비롯

한 13개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음

**[표 4-1]** 시군의 농업조직 편제유형

구분		운영방식
통합형	본청→센터	- 본청 농정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센터→본청	- 농업기술센터업무를 본청(주로 농정과)으로 이관
분리형		- 농정정책업무와 농업기술지원업무를 완전 분리수행

시도	분리운영	통합운영	
		본청→센터	센터→본청
계	84	59	11
경기	15(수원, 성남, 평택, 안산, 남양주, 군포, 용인, 이천, 안성, 화성, 광주, 여주, 연천, 가평, 양평)	6(고양, 시흥, 파주, 김포, 양주, 포천)	10(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동두천, 과천, 구리, 오산, 의왕, 하남)
강원	7(강릉,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정선)	11(춘천, 원주, 동해, 속초,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충북	11(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남	12(천안, 보령,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3(공주, 아산, 서산)	
전북	10(전주,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4(군산, 익산, 김제, 순창)	
전남	16(담양,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7(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무안, 장성)	1(목포)
경북	13(안동,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성주, 칠곡, 예천, 울진)	10(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경산, 고령, 봉화, 울릉)	
경남		18(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2. 분리운영 사례

### 1) 사례대상

- 농업관련 행정기구의 편제양식에서 분리형을 채택하고 있는 8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의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함
  - 2017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280,100명과 면적 464km<sup>2</sup> 및 도농형의 공간특성과 유사한 이천시와 강릉시 및 충주시 등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함

[표 4-2] 분리형 편제유형의 사례대상 선정

시도	분리운영
계	84
경기 (15)	수원, 성남, 평택, 안산, 남양주, 군포, 용인, 이천, 안성, 화성, 광주, 여주, 연천, 가평, 양평
강원 (7)	강릉,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정선
충북 (11)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남 (12)	천안, 보령,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북 (10)	전주,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전남 (16)	담양,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경북 (13)	안동,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성주, 칠곡, 예천, 울진

시군명	인구(명)	면적(km <sup>2</sup> )	공간특성	대상선정	
경기	수원시	1,202,628	121	도시형	
	성남시	967,510	142	도시형	
	평택시	481,530	458	도농형	
	안산시	677,710	154	도시형	
	남양주시	665,321	458	도농형	
	군포시	281,205	36	도시형	
	용인시	1,004,081	591	도농형	
이천시	213,142	461	도농형	대상	



시군명		인구(명)	면적(km <sup>2</sup> )	공간특성	대상선정
	안성시	182,786	554	도농형	
	화성시	691,086	690	도농형	
	광주시	345,947	431	도농형	
	여주시	111,984	608	도농형	
	연천군	45,431	676	농촌형	
	가평군	62,973	844	농촌형	
	양평군	115,105	878	농촌형	
강원	강릉시	213,952	1,040	도농형	대상
	태백시	45,888	303	도농형	
	삼척시	68,514	1,187	도농형	
	홍천군	70,340	1,820	농촌형	
	횡성군	46,281	998	농촌형	
	영월군	40,067	1,128	농촌형	
	정선군	38,173	1,220	농촌형	
충북	청주시	835,590	940	도농형	
	충주시	208,316	984	도농형	대상
	제천시	136,432	883	도농형	
	보은군	34,053	584	농촌형	
	옥천군	51,766	537	농촌형	
	영동군	50,240	846	농촌형	
	증평군	37,783	82	농촌형	
	진천군	73,677	407	농촌형	
	괴산군	39,054	842	농촌형	
음성군	97,306	520	농촌형		
단양군	30,215	781	농촌형		
충남	천안시	631,531	636	도농형	
	보령시	103,198	574	도농형	
	논산시	122,240	555	도농형	
	계룡시	43,967	61	도시형	
	당진시	167,439	704	도농형	
	금산군	53,894	577	농촌형	
	부여군	69,086	625	농촌형	
	서천군	55,175	358	농촌형	
	청양군	32,837	479	농촌형	
	홍성군	101,570	444	농촌형	
	예산군	80,338	542	농촌형	
태안군	63,932	516	농촌형		
전북	전주시	648,964	206	도시형	
	정읍시	113,776	692	도농형	
	남원시	83,281	753	도농형	

시군명	인구(명)	면적(km <sup>2</sup> )	공간특성	대상선정	
전남	완주군	95,975	821	농촌형	
	진안군	26,271	789	농촌형	
	무주군	24,809	632	농촌형	
	장수군	23,003	534	농촌형	
	임실군	30,162	597	농촌형	
	고창군	60,472	607	농촌형	
	부안군	56,086	493	농촌형	
	담양군	47,285	455	농촌형	
	구례군	30,131	547	농촌형	
	고흥군	66,736	807	농촌형	
	보성군	43,755	664	농촌형	
	화순군	64,680	787	농촌형	
	장흥군	40,136	622	농촌형	
	강진군	36,868	501	농촌형	
	해남군	73,604	1,013	농촌형	
	영암군	55,616	604	농촌형	
	함평군	34,328	392	농촌형	
	영광군	54,774	475	농촌형	
	완도군	52,109	396	농촌형	
	진도군	31,765	440	농촌형	
신안군	42,070	656	농촌형		
경북	안동시	166,272	1,522	도농형	
	상주시	100,947	1,254	도농형	
	문경시	73,294	912	도농형	
	군위군	24,215	614	농촌형	
	의성군	53,474	1,175	농촌형	
	청송군	26,006	846	농촌형	
	영양군	17,479	815	농촌형	
	영덕군	38,529	741	농촌형	
	청도군	43,346	693	농촌형	
	성주군	45,138	616	농촌형	
	칠곡군	120,864	451	농촌형	
	예천군	49,253	661	농촌형	
울진군	50,974	989	농촌형		

출처: 행정안전부. 2018 지방행정조직편람(2019).

## 2) 사례대상의 기구편제

- 농업정책기능과 농촌진흥기능을 분리하여 본청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로 편제하여 운영하는 사례대상의 기구편제 실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농촌진흥기능은 기본적으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농업정책기능은 이천시와 강릉시는 산업경제 관련 국에 과단위로 설치하고, 충주시는 농업정책기능을 전담하는 관련국(농업정책국)을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음
  - 상기에 따르면, 동일한 분리형 유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기능에 대한 기구적 대응이 국단위 또는 과단위 등으로 차별화되고 있음

[표 4-3] 분리형 사례대상의 기구편제 실태

구분	기구설치	직급단위	비고
이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청기구</li> <li>- 농정과</li> <li>- 축산과</li> <li>■ 농업기술센터</li> <li>- 농업진흥과</li> <li>- 기술보급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정책기구</li> <li>- 과단위(행정·농업 5급)</li> <li>■ 농업진흥기구</li> <li>- 과단위(농촌지도관)</li> </ul>	산업환경국
강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청기구</li> <li>- 농정과</li> <li>- 축산과</li> <li>■ 농업기술센터</li> <li>- 자원육성과</li> <li>- 기술보급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정책기구</li> <li>- 과단위(행정·농업 5급)</li> <li>■ 농업진흥기구</li> <li>- 과단위(농촌지도관)</li> </ul>	산업경제국
충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청기구</li> <li>- 농정과</li> <li>- 친환경농산과</li> <li>- 산림녹지과</li> <li>- 축산과</li> <li>■ 농업기술센터</li> <li>- 농업자원과</li> <li>- 농업소득과</li> <li>- 농업활력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정책기구</li> <li>- 국단위(행정·기술 4급)</li> <li>■ 농업진흥기구</li> <li>- 과단위(농촌지도관)</li> </ul>	농업정책국

### 3. 통합운영(본청→센터) 사례

#### 1) 사례대상

- 농업관련 행정기구의 편제양식에서 통합형(본청→센터)을 채택하고 있는 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의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함
  - 2017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280,100명과 면적 464km<sup>2</sup> 및 도농형의 공간특성과 유사한 양주시와 춘천시, 군산시, 여주시, 순천시, 경주시, 경산시, 거제시 등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함

**【표 4-4】** 통합형 편제유형의 사례대상 선정

시도	통합형(본청→센터)
계	59
경기 (6)	고양, 시흥, 파주, 김포, 양주, 포천
강원 (11)	춘천, 원주, 동해, 속초,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충남 (3)	공주, 아산, 서산
전북 (4)	군산, 익산, 김제, 순창
전남 (7)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무안, 장성
경북 (10)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경산, 고령, 봉화, 울릉
경남 (18)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시군명	인구(명)	면적(km <sup>2</sup> )	공간특성	대상선정
경기	고양시	1,041,983	268	도농형	
	시흥시	419,664	135	도농형	
	파주시	437,848	673	도농형	
	김포시	392,092	277	도농형	

시군명		인구(명)	면적(km <sup>2</sup> )	공간특성	대상선정
	양주시	212,146	310	도농형	대상
	포천시	152,925	826	도농형	
강원	춘천시	280,514	1,116	도농형	대상
	원주시	341,337	868	도농형	
	동해시	92,851	180	도농형	
	속초시	82,273	106	도농형	
	평창군	43,092	1,464	농촌형	
	철원군	47,185	889	농촌형	
	화천군	26,022	909	농촌형	
	양구군	23,835	702	농촌형	
	인제군	32,582	1,645	농촌형	
	고성군	30,029	664	농촌형	
	양양군	27,207	630	농촌형	
충남	공주시	108,432	864	도농형	
	아산시	311,453	542	도농형	
	서산시	171,678	741	도농형	
전북	군산시	274,997	681	도농형	대상
	익산시	300,187	507	도농형	
	김제시	86,926	545	도농형	
	순창군	29,698	496	농촌형	
전남	여수시	286,382	508	도농형	대상
	순천시	279,331	910	도농형	대상
	나주시	110,110	608	도농형	
	광양시	155,857	460	도농형	
	곡성군	30,131	547	농촌형	
	무안군	82,872	450	농촌형	
	장성군	46,111	518	농촌형	
	포항시	513,832	1,130	도농형	
	경주시	257,903	1,324	도농형	대상
	김천시	142,908	1,009	도농형	
	구미시	421,799	616	도농형	
	영주시	108,371	669	도농형	
	영천시	100,615	919	도농형	
	경산시	259,485	412	도농형	대상
	고령군	33,768	384	농촌형	

시군명	인구(명)	면적(km <sup>2</sup> )	공간특성	대상선정	
경남	봉화군	33,259	1,201	농촌형	
	울릉군	9,975	73	농촌형	
	창원시	1,057,032	747	도농형	
	진주시	346,681	713	도농형	
	통영시	135,833	240	도농형	
	사천시	114,252	399	도농형	
	김해시	532,132	463	도농형	
	밀양시	107,898	799	도농형	
	거제시	254,073	403	도농형	대상
	양산시	338,535	485	도시형	
	의령군	27,849	483	농촌형	
	함안군	68,207	416	농촌형	
	창녕군	64,101	533	농촌형	
	고성군	54,060	517	농촌형	
	남해군	44,642	357	농촌형	
	하동군	48,831	675	농촌형	
	산청군	36,340	794	농촌형	
	함양군	40,175	725	농촌형	
	거창군	62,763	803	농촌형	
	합천군	47,000	983	농촌형	

출처: 행정안전부. 2018 지방행정조직편람(2019).

## 2) 사례대상의 기구편제

- 농업정책기능과 농업진흥기능을 통합하여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편제하여 운영하는 사례대상의 기구편제 실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는 과단위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3~5개이고, 과단위의 규모에 따라서 농업정책기능과 농촌진흥기능의 기구적 통합 또는 분리가 나타나고 있으며, 소장의 직급은 5~4급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농업정책기능과 농촌진흥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과단위 규모가 4개 이상이면서 소장의 직급은 4급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다수로 나타나고 있음

**【표 4-5】 통합형(본청→센터) 사례대상의 기구편제 실태**

구분	기구설치	직급단위	비고
양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센터</li> <li>- 농업정책과</li> <li>- 농촌관광과</li> <li>- 작물축산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 직급</li> <li>- 행정·농업5급/농촌지도관</li> </ul>	3과/5급
춘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센터</li> <li>- 농정과</li> <li>- 산림과</li> <li>- 유통원예과</li> <li>- 축산과</li> <li>- 기술지원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 직급</li> <li>- 행정·농업4급/농촌지도관</li> </ul>	5과/4급
군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센터</li> <li>- 농정과</li> <li>- 농촌지원과</li> <li>- 기술보급과</li> <li>- 농산물유통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 직급</li> <li>- 농업5급/농촌지도관</li> </ul>	4과/5급
여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센터</li> <li>- 농업정책과</li> <li>- 농촌진흥과</li> <li>- 미래농업과</li> <li>- 특산품육성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 직급</li> <li>- 행정기술4급/농촌지도관</li> </ul>	4과/4급
순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센터</li> <li>- 농업정책과</li> <li>- 친환경축산과</li> <li>- 산림소득과</li> <li>- 농촌지원과</li> <li>- 미래농업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 직급</li> <li>- 행정기술4급/농촌지도관</li> </ul>	5과/4급
경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센터</li> <li>- 농정과</li> <li>- 농업진흥과</li> <li>- 농촌개발과</li> <li>- 축산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 직급</li> <li>- 농촌지도관/서기관/기술서기관</li> </ul>	4과/4급
경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센터</li> <li>- 농정유통과</li> <li>- 친환경축산과</li> <li>- 농촌진흥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 직급</li> <li>- 행정·기술4급/농촌지도관</li> </ul>	3과/4급

구분	기구설치	직급단위	비고
거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센터</li> <li>- 농업정책과</li> <li>- 농업지원과</li> <li>- 농업개발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 직급</li> <li>- 행정·기술4급/농촌지도관</li> </ul>	3과/4급

## 4. 통합운영(센터→본청) 사례

### 1) 사례대상

- 농업관련 행정기구의 편제양식에서 통합형(센터→본청)을 채택하고 있는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의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함
  - 2017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280,100명과 면적 464km<sup>2</sup> 및 도농형의 공간특성과 유사한 통합형(센터→본청)은 없으나, 인구규모와 공간특성을 감안하여 광명시와 하남시 및 목포시를 사례대상으로 선정함

[표 4-6] 분리형 편제유형의 사례대상 선정

시도	통합형(센터→본청)
계	11
경기 (10)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동두천, 과천, 구리, 오산, 의왕, 하남
전남 (1)	목포

시군명	인구(명)	면적(km <sup>2</sup> )	공간특성	대상선정	
경기	의정부시	441,584	82	도농형	
	안양시	587,764	59	도시형	
	부천시	850,329	54	도시형	
	광명시	332,790	39	도농형	대상
	동두천시	97,071	96	도농형	



시군명	인구(명)	면적(km <sup>2</sup> )	공간특성	대상선정	
	과천시	57,527	36	도시형	
	구리시	200,042	33	도시형	
	오산시	213,437	43	도시형	
	의왕시	155,767	54	도시형	
	하남시	232,487	93	도시형	대상
전남	목포시	234,379	50	도시형	대상

출처: 행정안전부. 2018 지방행정조직편람(2019).

## 2) 사례대상의 기구편제

- 농업정책기능과 농업진흥기능을 통합하여 본청에 편제하여 운영하는 사례 대상의 기구편제 실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농업정책기능과 농촌진흥기능을 통합하여 본청에 편제하고 있는 사례대상 들은 기본적으로 도시형 지방자치단체로 농업관련 수요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전반적으로 타 기능(위생기능)과 통합하여 과단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목포시는 다른 사례대상과 달리 농업관련 과단위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표 4-기]** 통합형(센터→본청) 사례대상의 기구편제 실태

구분	기구설치	직급단위	비고
광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위생과</li> <li>- 도시농업담당</li> <li>- 축산행정담당</li> <li>- 식품안전담당</li> <li>- 위생민원담당</li> <li>- 위생관리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 직급</li> <li>- 행정·농업 6급</li> </ul>	위생기능 통합
하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위생과</li> <li>- 농업정책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 직급</li> <li>- 행정·농업6급</li> </ul>	위생기능 통합

구분	기구설치	직급단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위생담당</li> <li>- 도시농업담당</li> <li>- 농업기술지원담당</li> <li>- 위생관리담당</li> <li>- 위생지도담당</li> </ul>		
목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산업과</li> <li>- 유통담당</li> <li>- 친환경농정담당</li> <li>- 축산담당</li> <li>- 학교급식지원담당</li> <li>- 농업지원센터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장 직급</li> <li>- 행정·기술5급</li> </ul>	농업기능 전담

### 제3절 사례분석 결과

- 전술한 바와 같이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농업정책기능과 농촌진흥기능을 각각 본청과 직속기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모두 과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단위의 직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담당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다수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농업 등의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과단위 설치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농업관련 행정조직을 본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도시형으로 농업관련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됨

[표 4-8] 사례분석의 결과종합

구분	기구설치	직급단위	비고
분리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청 - 2~3개 과단위 설치</li> <li>■ 직속기관 - 2~3개 과단위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청 - 행정/농업 5급</li> <li>■ 직속기관 - 농촌지도관(5급)</li> </ul>	국단위 설치 (충주시)
통합유형 (본청→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단위 설치 - 일부 과단위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속기관 - 농촌지도관(4급)</li> <li>- 행정/기술(4급)</li> </ul>	과단위 설치 (양주시)
통합유형 (센터→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단위 설치 - 2~3개 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청 - 행정/농업 6급</li> </ul>	과단위 설치 (목포시)

# 제5장

##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방안

---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논리

제3절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방안

제4절 개편대안의 적용방안



## 제5장

##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방안

KRI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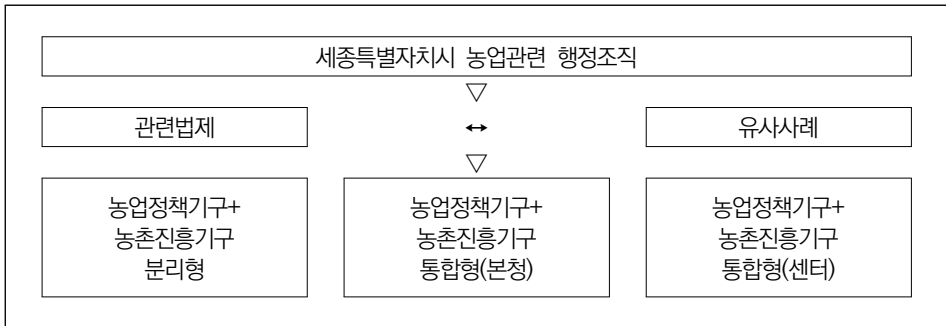
## 제1절

## 기본방향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개편방안은 현행의 조직시스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즉, 농업정책기능과 농촌진흥기구의 분리편제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기능의 중복현상과 관련기구의 분산편제 및 인력운영의 제약 등과 이에 따른 조직운영의 비효율성과 수요변화의 탄력대응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임
- 상기의 문제해결 방향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은 다양한 법적 규정에 따라 설계와 운영에서 다양한 한계들이 존재하고 있음
  -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지방자치법」과 「농촌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방안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개편대안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모색하고자 함
  - 기본적으로는 전술한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의 법적 규정의 범위를 고려하고, 다음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들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에 관한 사례유형을 반영하여 적절한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의 적용을 통해서 현행의 한계들을 해소함

- 즉, 관련법제와 유사사례의 반영을 통해서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를 현재와 같이 분리형 구조를 유지하는 대안과 본청으로 통합하는 대안 및 센터로 통합하는 대안 등을 설계하되, 현행의 조직편제에서 발생되고 있는 제반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임

[그림 5-1] 개편대안의 검토방향



## 제2절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논리

### 1. 조직설계 의의

- 행정조직은 인력과 더불어 조직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 수단의 성격을 갖는 것임
  - 즉, 모든 조직체는 그 조직체의 목적을 조직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조직체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주어지고 있는 것임
- 조직설계는 결국,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 조직체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할 경우 농업관련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함
- 이와 같은 조직설계는 해당 조직체의 특성이나 추구하는 목적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경로비용을 감축하기 위하여 팀제 형태의 조직설계를 도모하거나, 안정적인 환경 하에서 통솔범위의 원리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층제적 조직설계를 선택하는 것 등이 그것임
  -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조직설계 방식을 준용하는 까닭에 계층제적 조직설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

### 2. 조직설계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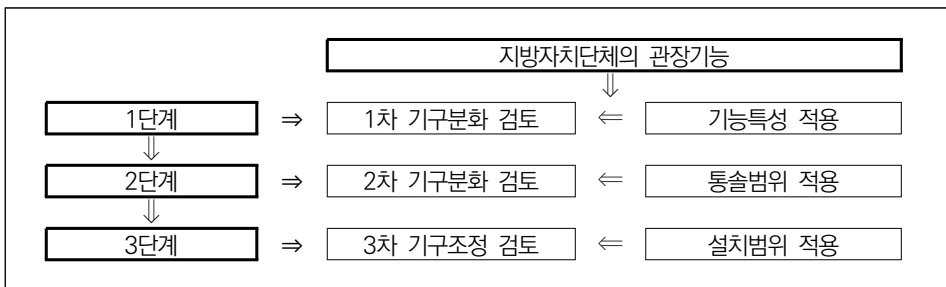
- 조직설계는 조직에 부여된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에 주된 초점을 두는 까닭에 조직설계의 일반원리들을 고려하여 최적모형을 모색하게 됨
  -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조직의 경우 계층제 등 일부 원리들이 전제된 상황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능특성과 통솔범위를 적극적인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제기준으로 기구설치의 범위를 적용하게 됨

- 기구설계의 1단계는 기능특성을 적용하여 기구의 분화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원리가 반영되는 것임
  - 특정의 조직이 다수의 상이한 기능을 관장하는 경우 동질적인 기능으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기구로 편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획기능과 지원기능, 사업기능 등으로 기구편제를 달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기구설계의 2단계는 통솔범위를 적용하여 기구의 분화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원리가 반영되는 것임
  - 상기의 기능특성을 기준으로 각기 달리 편제된 기구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차하위 단위의 기구규모가 적정의 통솔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구를 분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경제 기능 등을 하나 이상의 실국으로 편제하는 것을 말함
- 기구설계의 3단계는 설치범위를 적용하여 기구의 분화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원리가 반영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본청의 기구설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이의 범위 내에서 기구의 분화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함

[그림 5-2] 기구설계의 검토기준



출처: 금창호 외(2015).

## 제3절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방안

### 1. 분리구조 편제대안

#### 1) 관련법제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을 분리구조의 편제로 개편하는 관련 법제의 논거로는 다음을 제시할 수 있음
  - 현행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은 분리구조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설치와 관련된 상기의 법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제113조에서는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서는 농촌진흥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직속기관으로 농촌진흥기구인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5-1] 분리구조 편제논거

구분	내용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기관 설치</li> <li>-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li> <li>■ 소속 행정기관 설치</li> <li>- 직속기관 설치</li> </ul>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속기관 설치</li> <li>- 농업기술센터 설치</li> </ul>

## 2) 기존사례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을 분리구조로 편제하는 또다른 논거로는 기존의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음
  -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를 분리하여 편제하는 기존사례는 경상남도를 제외한 7개 도의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농업정책기구는 본청에 그리고 농촌진흥기구는 직속기관으로 편제하는 것이 기본구조임
  - 다만,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의 기구규모는 기구설치의 범위와 농업관련 행정수요에 따라서 시·군별로 다르나, 기본적으로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의 과단위 규모가 각각 2개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2]** 분리형 편제유형의 기존사례

시도	대상 지자체
합계	84개
경기 (15)	수원, 성남, 평택, 안산, 남양주, 군포, 용인, 이천, 안성, 화성, 광주, 여주, 연천, 가평, 양평
강원 (7)	강릉,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정선
충북 (11)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남 (12)	천안, 보령,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북 (10)	전주,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전남 (16)	담양,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경북 (13)	안동,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성주, 칠곡, 예천, 울진

### 3) 개편대안

#### 가. 검토방향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의 분리편제에 기초한 개편대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검토함
  - 기본적으로 농업정책기능은 본청에 관련기구를 설치하고, 농촌진흥기구는 직속기관에 관련기구를 설치하되, 양자간 기능의 조정을 통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임
-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의 관장기능에 대한 조정은 원칙적으로 기능동질성을 기준으로 조정여부를 판단함
  - 기능의 동질성은 기능특성과 적용대상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분리편제 개편대안의 설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의 순차적 적용을 통해서 기능을 조정함
  - 1단계로는 특정기능이 농업정책기능 또는 농촌진흥기능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하는 기능특성을 적용하고, 2단계로는 농업기능과 축산기능, 농촌기능 등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하는 적용대상을 반영하는 것임

#### 나. 검토내역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를 대상으로 전술한 기능조정 판단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기능특성과 적용대상을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가축방역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은 현행의 관장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가축방역은 원칙적으로 농업정책에 포함되는 기능이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기능을 관장하고 있어서 기능의 중복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인 농업정책과 달리 방역업무는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므로 동물위생시험소로 이관하여 통합적 대응

을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임

[표 5-3] 농업관련 행정기능의 조정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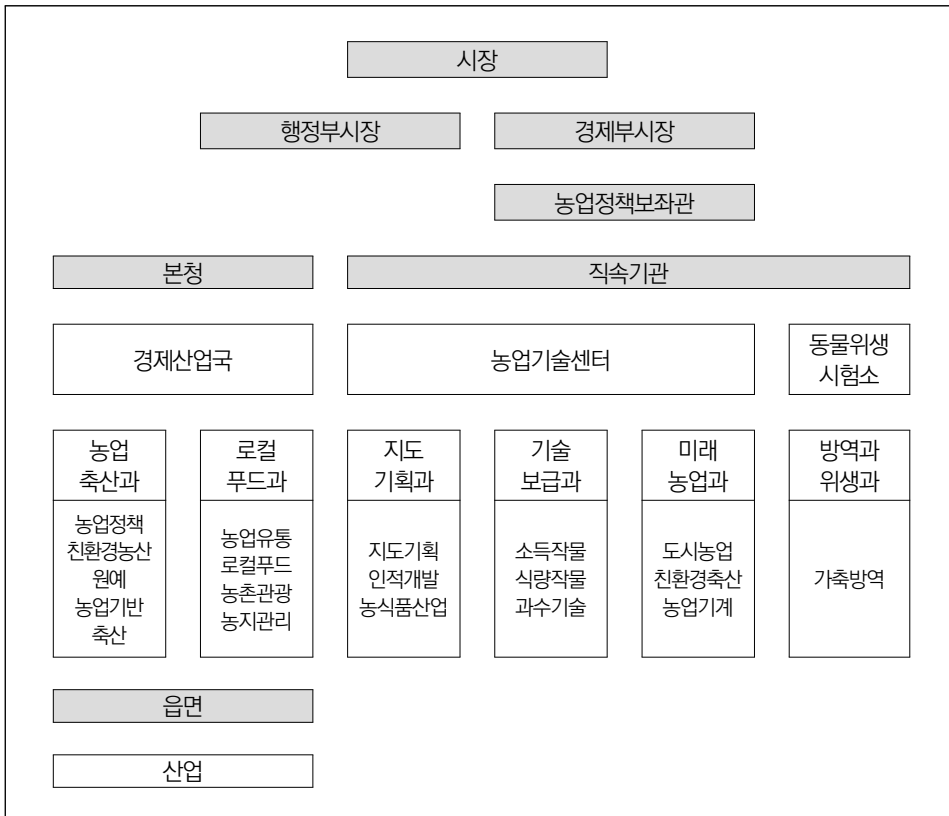
실국	과	담당	판단기준		최종판단
			기능특성	적용대상	
경제 산업국	농업 축산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농업	유지
		친환경농산 원에	농업정책	농업	유지
		농업기반 축산	농업정책	농업	유지
		가축방역	농업정책	축산	유지
			농업정책	방역	이관
	로컬 푸드과	농업유통	농업정책	유통	유지
		공공급식	농업정책	유통	유지
		로컬푸드	농업정책	유통	유지
		6차산업	농업정책	복합	유지
		농지관리	농업정책	농업	유지
농업 기술센터	지도 기획과	지원기획	농촌진흥	생활	유지
		인적개발	농촌진흥	생활	유지
		생활지원	농촌진흥	생활	유지
	기술 보급과	소득작물	농촌진흥	기술	유지
		식량작물	농촌진흥	기술	유지
		과수기술	농촌진흥	기술	유지
		동부지구소	농촌진흥	기술	유지
		남부지구소	농촌진흥	기술	유지
	미래 농업과	북부지구소	농촌진흥	기술	유지
		도시농업	농촌진흥	생활	유지
친환경축산		농촌진흥	기술	유지	
	농업기계	농촌진흥	기술	유지	

다. 개편대안

- 전술한 검토결과를 반영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분리편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현행의 본청 경제산업국의 농업정책기구와 직속기관의 농촌진흥기구를 그대로 유지하되, 기능기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가축방역기구를 동물위생시험소로 이관하는 것임

- 다만, 기능조정과 상관없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기조에 따른 일부 기구 개편을 개편대안에 반영하는 것임
- 본청 로컬푸드과의 6차산업담당과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과의 생활자원담당의 관장기능을 조정하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의 3개 지구소(동부/남부/북부)는 폐지하여 해당 읍면의 산업담당에 관련인력을 배치하여 대응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

[그림 5-3] 분리형 개편대안



#### 4) 장단점

- 상기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분리구조 편제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음
  - 분리구조 편제양식의 장점으로서는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설치법제를 준용하고, 농업정책기능과 농촌진흥기능의 전담대응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기구분리에 따른 기능의 중복현상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고, 동일한 수혜대상에 대하여 유사업무의 통합제공이 곤란함

[표 5-4] 분리구조 편제양식의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공급측면	- 농업관련 행정조직 분리편제의 관련법제 준용
	수요측면	- 농업정책기능과 농촌진흥기능의 전담지원 용이
단점	공급측면	- 기구분리에 따른 기능중복 발생 개연성 상존
	수요측면	- 동일 수혜대상의 유사업무 통합제공 곤란

## 2. 통합구조 개편대안(본청 통합)

### 1) 관련법제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을 통합구조(본청)의 편제로 개편하는 관련법제의 논거로는 다음을 제시할 수 있음
  -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도의 경우에는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구설치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상기의 규정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본청의 기구설치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 기구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청에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기 기준의 100분

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을 농업관련 국으로 선정하는 것임

[표 5-5] 시도의 기구설치 범위

구분		실·국·본부
광역시	서울특별시	16개 이상 18개 이하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4개 이상 16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3개 이상 15개 이하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2개 이상 14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도	세종특별자치시	6개 이상 8개 이하
	경기도	20개 이상 22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개 이상 11개 이하
단서 조항	<p>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시·도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4. 30.]</p>	

## 2) 기존사례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을 통합(본청)구조로 편제하는 또다른 논거로는 기존의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음
  -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를 통합(본청)하여 편제하는 기존사례는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11개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를 모두 본청에 편제하는 기본구조임



- 다만,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를 통합하여 본청에 편제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농업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도시형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표 5-6] 통합형(본청) 편제유형의 기존사례**

시도	통합형(센터→본청)
합계	11개
경기 (10)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동두천, 과천, 구리, 오산, 의왕, 하남
전남 (1)	목포

### 3) 개편대안

#### 가. 검토방향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의 본청 통합편제에 기초한 개편대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검토함
  - 현재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진흥 관련기구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대안이므로 설치단위와 통솔범위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기구설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국 등의 설치에 일정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 즉, 본청의 실국설치는 관장업무가 4개 이상의 과단위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적정수준의 통솔범위를 고려하는 것임

#### 나. 검토내역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를 지역본부로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기구의 설치단위와 통솔범위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의 본청 통합설치를 위한 기구의 설치단위에 대한 검토결과는 현행의 본청 2개 과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3개 과를 통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본청 실국단위 설치기준인 4개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솔범위에 대한 검토결과는 통합 과단위 규모가 5개로 실국의 적정 통솔범위인 4~6개 과의 범위 이내로 역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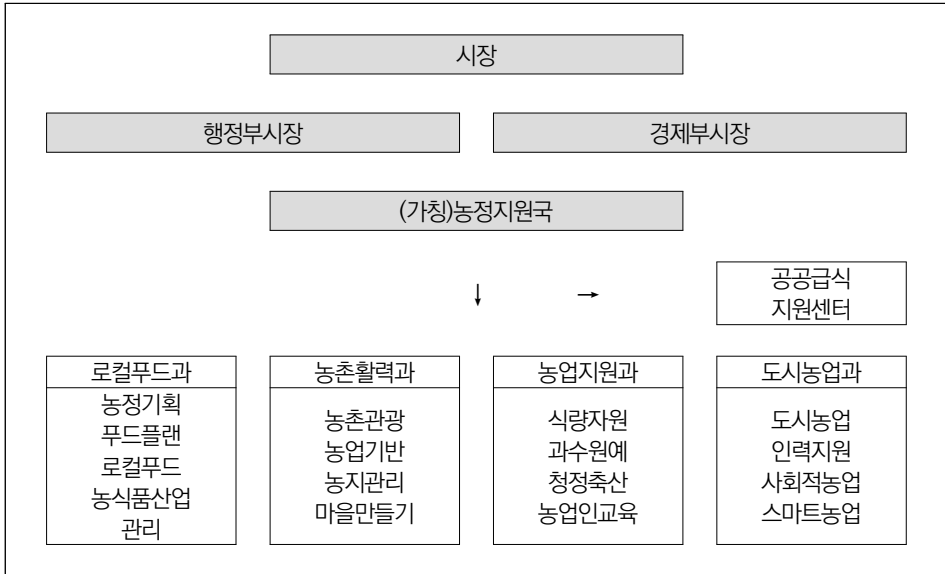
[표 5-7] 농업관련 행정기능의 본청 통합설치 검토

실국	과	담당	판단기준		최종판단
			실국설치	통솔범위	
경제 산업국	농업 축산과	농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국설치 기준</li> <li>- 4개 과 이상</li> <li>■ 통합설치 규모</li> <li>- 5개 과 규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솔범위 기준</li> <li>- 4~6개 과 규모</li> <li>■ 통솔범위 실태</li> <li>- 5개 과 설치 이내</li> </ul>	적합
		친환경농산			
		원예			
		농업기반			
		축산			
	로컬 푸드과	가축방역			
		농업유통			
		공공급식			
		로컬푸드			
		6차산업			
농업 기술센터	지도 기획과	농지관리			
		지원기획			
		인적개발			
		생활자원			
	기술 보급과	소득작물			
		식량작물			
		과수기술			
		동부지구소			
		남부지구소			
	미래 농업과	북부지구소			
도시농업					
친환경축산					
		농업기계			

## 다. 개편대안

- 전술한 검토결과를 반영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통합편제(본청)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현행의 본청 경제산업국의 농업정책기구와 직속기관의 농촌진흥기구를 통합하여 독립적인 농업관련 국을 신설하되, 전술한 분리편제 대안에서 제시한 가축방역은 동물위생시험소로 이관하는 대안을 그대로 준용함
- 다만, 본청의 농업정책기능과 직속기관의 농촌진흥기능을 본청의 독립국으로 새로이 편제하는 것이므로 전체기능을 재편하는 설계를 추진함
  - 즉, 현행의 농업정책기능과 농촌진흥기능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의 농업의 수요변화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체적 정책기조 등을 반영하여 새로이 편제하는 것임
- 상기의 논의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통합편제(본청) 개편대안은 다음과 같이 설계함
  - 농업관련 전체기능을 스마트농업(1차 생산)과 로컬푸드(2차 가공), 농촌활력(3차 관광) 및 도시농업으로 구분하여 현행의 5개 과에서 4개 과로 재편하고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체적 정책기조에 따라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농업정책 개발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농정기획담당을 신설하며, 농촌관광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마을만들기담당을 신설하며, 인력양성담당은 농업인교육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농업지원과로 이관하고,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와 도시지역의 유희인력을 중개할 인력지원담당을 신설함

[그림 5-4] 통합형(본청) 개편대안



#### 4) 장단점

- 상기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통합구조(본청) 편제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음
  - 본청으로의 통합구조 편제양식의 장점으로는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동일 수혜대상의 유사업무 통합제공이 가능하나, 반면에 단점으로는 기술개발 공간의 현지성 등으로 본청 기구설치 원리가 충족되지 않고, 기술개발 등에 관한 정책비중이 낮아질 경우 이에 따른 전문성 확보의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고, 나아가 기존사례에서 본청으로의 통합은 농업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형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여건과 부합하지 않음

[표 5-8] 통합구조(본청) 편제양식의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공급측면	- 농업관련 행정조직 통합으로 조직관리 효율성 확보
	수요측면	- 동일 수혜대상의 유사업무 통합제공 확보
단점	공급측면	- 기술개발 공간의 현저성 등 본청 기구설치 원리 미확보
	수요측면	- 기술개발 기능 등의 정책적 비중저하로 전문성 미흡

### 3. 통합구조 개편대안(지역본부)

#### 1) 관련법제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을 통합구조(지역본부)의 편제로 개편하는 관련법제의 논거로는 다음을 제시할 수 있음
  -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정지역의 정책강화나 특정기능의 통합수행을 위하여 지역본부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상기의 규정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의 통합구조로 지역본부의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시·도는 특정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기획 기능 등 본청의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본청의 기능을 사업소의 기능과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본부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지역본부의 장은 2급으로 보하고, 본청의 실·국·본부의 기능과 조직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실·국·본부의 수에 포함하여야 함

[표 5-9] 지역본부 설치논거

구분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 설치</li> <li>- 특정지역 정책강화</li> <li>- 본청기능과 사업소기능 통합 수행</li> </ul>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장 직급</li> <li>- 2급 보임</li> <li>■ 기구설치 범위 산입</li> <li>- 본청 기구설치 범위 포함</li> </ul>

## 2) 기존사례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을 통합(지역본부)구조로 편제하는 또 다른 논거로는 기존의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음
  -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를 통합(지역본부)하여 편제하는 기존사례는 충청북도를 제외한 7개 도의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를 통합하여 직속기관에 설치하는 구조임
  - 다만,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를 통합하여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로 편제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농업수요에 따라서 과단위의 규모와 농촌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편제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획일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표 5-10] 통합형(지역본부) 편제유형의 기존사례

시도	통합형(본청→센터)
합계	59개
경기 (6)	고양, 시흥, 파주, 김포, 양주, 포천
강원 (11)	춘천, 원주, 동해, 속초,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시도	통합형(본청→센터)
충남 (3)	공주, 아산, 서산
전북 (4)	군산, 익산, 김제, 순창
전남 (7)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무안, 장성
경북 (10)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경산, 고령, 봉화, 울릉
경남 (18)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3) 개편대안

#### 가. 검토방향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의 지역본부 통합편제에 기초한 개편대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검토함
  - 현재 본청의 경제산업국의 농업정책 관련기구와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진흥 관련기구를 통합하여 지역본부로 설치하는 대안이므로 특정지역 정책강화 또는 기능통합 수행필요 등에 대한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역본부 설치논거에 대한 충족도를 판단하는 것임
  - 즉, 본청의 농업정책기능과 직속기관의 농촌진흥기능의 지역본부 통합수행이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판단함

#### 나. 검토내역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를 지역본부로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본부 설치요건의 충족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정책기구와 농촌진흥기구의 지역본부 통합설치를 위한 법적요건 충족도에 대한 검토결과는 지역본부 설치의 2개 요건 가운데 본청과 사업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성에 해당되어 설치대안의 타당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5-11] 농업관련 행정기능의 지역본부 통합설치 검토

실국	과	담당	판단기준		최종판단
			특정지역 정책강화	기능통합 수행필요	
경제 산업국	농업 축산과	농업정책	- 미부합	- 부합	- 적합
		친환경농산			
		원예			
		농업기반			
		축산			
	로컬 푸드과	가축방역			
		농업유통			
		공공급식			
		로컬푸드			
		6차산업			
농업 기술센터	지도 기획과	농지관리			
		지원기획			
		인적개발			
	기술 보급과	생활자원			
		소득작물			
		식량작물			
		과수기술			
		동부지구소			
	미래 농업과	남부지구소			
		북부지구소			
		도시농업			
		친환경축산			
		농업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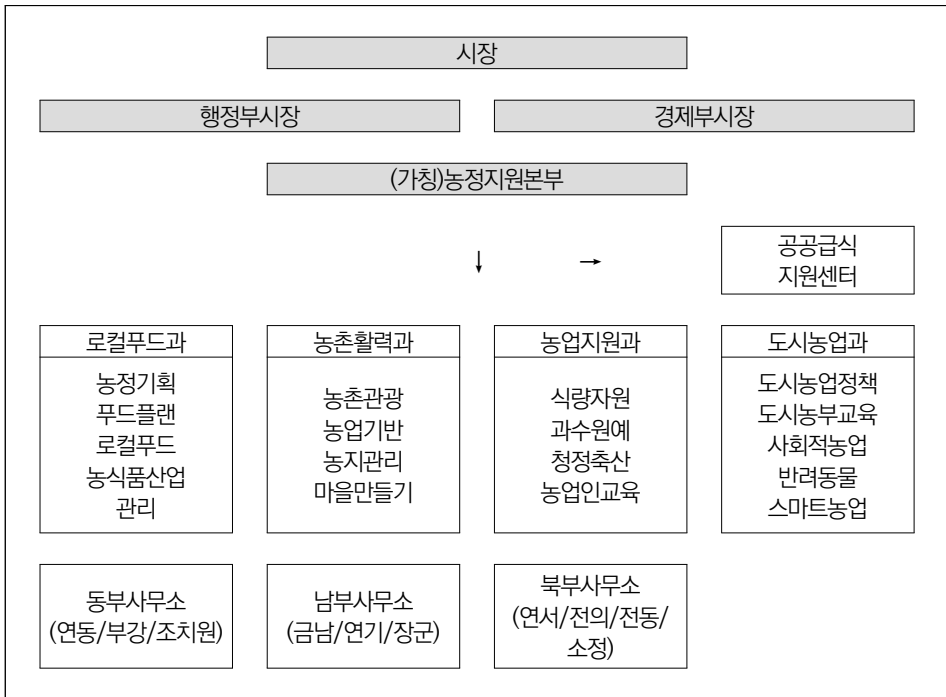
#### 다. 개편대안

- 전술한 검토결과를 반영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통합편제(지역본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현행의 본청 경제산업국의 농업정책기구와 직속기관의 농촌진흥기구를 통합하여 독립적인 지역본부를 설치하되, 전술한 통합편제(본청)의 대안을 그대로 준용함
-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에 본청으로의 통합기구 설치사례에서 농업기술센터의 폐지가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므로 (가칭)농정지원본부의 설치에서도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음

[그림 5-5] 통합형(지역본부) 개편대안



○ 뿐만 아니라 10개 읍면의 농업지원기능과 농업기술센터의 5개 상담소 (현재 3개 상담소 운영 중)의 상담기능을 통합하여 3개의 권역별 사무

소를 설치함(동부사무소, 남부사무소 및 북부사무소)

- 읍면에 농업지원기능을 배치하는 것은 본청의 관련정책기능을 보좌하기 위한 조치로 (가칭)농정지원본부를 사업소 형태로 설치하고 보좌기관으로 지역사무소를 두는 것이므로 관련법제를 위반하는 조치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4) 장단점

- 상기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통합구조(지역본부) 편제는 전술한 통합구조(본청)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음
  - 지역본부 설치를 통한 기구의 통합으로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동일 수혜대상의 유사업무 통합제공이 가능하나, 반면에 단점으로는 지역본부장의 직급 등의 기준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곤란하거나 지역본부가 읍면조직을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함

**[표 5-12]** 통합구조(지역본부) 편제양식의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공급측면	농업관련 행정조직 통합으로 조직관리 효율성 확보
	수요측면	동일 수혜대상의 유사업무 통합제공 확보
단점	공급측면	직급 등의 법적 기준 해결곤란
	수요측면	지역본부의 읍면조직 통할 애로

## 제4절 개편대안의 적용방안

### 1. 최적대안의 선정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개편대안으로 상기의 3개의 대안을 제시하였음
  - 즉, 농업정책기능과 농촌진흥기능을 대상으로 분리편제 개편대안과 통합편제(본청) 개편대안 및 통합편제(지역본부) 개편대안 등이 그것임
- 상기의 3개 개편대안은 각기 상이한 개편논거에 따라 설계된 것으로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편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즉, 개편대안의 적용으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최적 개편대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3개 대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그 충족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즉, 개편대안의 법제적 충족성과 현실적 수용성 및 미래적 발전성 등의 3가지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우위의 개편대안을 판단하는 것임
- 전술한 3개의 개편대안을 대상으로 법제적 충족성과 현실적 수용성 및 미래적 발전성 등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농업정책기능과 농촌진흥기구를 지역본부의 설치로 통합하여 편제하는 것이 나머지 2개의 개편대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타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3] 개편대안의 타당성 판단

구분	판단기준			판단결과
	법제적 충족성	현실적 수용성	미래적 발전성	
분리편제	○ (3)	○ (3)	× (1)	7
통합편제 (본청)	○ (3)	△ (2)	△ (2)	7
통합편제 (지역본부)	○ (3)	△ (2)	○ (3)	8

주: 판단기준의 충족수준을 기준으로 ○(3), △(2), ×(1)로 점수화함.

## 2. 개편대안 적용방안

- 상기의 지역본부로 통합하여 편제하는 개편대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즉,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법제적 측면과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수용적 측면 등이 그것임
- 지역본부를 설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법제적 측면의 검토내용은 지역본부 설치요건과 본부장의 직급 등이 해당됨
  -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칭)농정지원본부” 설치에 본청의 기능을 사업소의 기능과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성에 해당되나, 현재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에 따르면, 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지역본부 장의 직급은 2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 본청의 국장급에 비하여 높은 직급으로 책정되어 행정안전부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히 수용성이 낮게 되므로 본부장의 직급을 3급으로 조정하는 협의가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추진될 필요가 있음

[표 5-14] 사업본부·사업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구분		장의 직급	차장	부장	과장 또는 담당관
특별시	지역본부	1급 또는 2급			4급
	사업본부	1급 또는 2급	3급	4급	5급
	사업소	3급부터 5급까지		4급	5급
광역시·특별자치시·도	지역본부	2급			4급
	사업본부	3급 또는 4급		4급	5급
	사업소	4급 또는 5급			5급
시·군·자치구	인구 15만 이상	4급부터 6급까지			5급
	인구 15만 미만	5급 또는 6급			

- 지역본부를 설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수용적 측면의 검토 내용은 본청의 기구설치 범위가 해당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 따르면, 시·도 본청의 실·국·본부의 기능과 조직을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농업관련 지역본부를 설치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수를 삭감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조직관리팀 및 시장님의 사전 승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
  - 실국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경제산업국에 농정업무를 총괄하는 1개 담당을 존치시키고, 3급상당 사업소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이 가능할 것임
  - 아울러, 본청 하부조직(읍면)과 농업기술센터 하부조직(지소)의 농업지원과 상담업무를 이관받아 사업소 또는 지역본부 산하에 거점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됨

- 금창호(2018). 청주시 조직진단 중점분석: 보건기구 및 농업기구 적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금창호 외(2010).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445권.
- 김병국·권오철(2007). 지방자치단체 농업행정의 조직관리 효율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9권제4호.
- 농촌진흥청(2008). 농업관련 조직 변천사. 농업진흥청.
- 윤재선·김병국(2007). 지방정부의 조직·인사혁신론. 한림대학교 출판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정책연구보고.